

현안분석 2007-

법령용어 연구 07-03

#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 현 철

#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Education related Law

연구자 : 강현철(부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7. 10. 31.

## 국문 요약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 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교육 관련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교육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관

런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교육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로 교육과 학교관련 법률을 그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 키워드 : 법령용어, 교육관련법령, 교육법, 알기 쉬운 법령, 법언어학, 입법학, 법령용어순화

## Abstract

The education related law ne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because of incomprehensibility to cause expression chinese and japanese. Therefore, this report studies on a question and a scheme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education related law classify a field.

This field classify terminology of the organization, a personnel management administration,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education related law. In particular, this report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 provisions in educa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make the good use of research material for establish and revision in law.

As well, This suggestion hope to study a synthesis under conditions of insufficiency opinion about education related law. This suggestion hope to make an opportunity of comparison and examination about opinion of another reciprocity.

※ Key words : education related law,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terminology, education law

# 목 차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5
I. 머리말 .....	9
II. 법령용어와 문장순화의 방향성 .....	11
1. 한자의 순화 .....	11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	12
3. 문장의 순화 .....	13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	13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	13
3) 조사의 순화 .....	13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	14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	14
III.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	15
1.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정비기준 .....	15
2. 법령문장에 대한 순화정비 기준 .....	19
<부 록>	
고등교육법 .....	27
교육기본법 .....	55
유아교육법 .....	67
초·중등교육법 .....	83
사립학교법 .....	117

## I. 머리말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문장과 용어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알기 쉽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령의 문장과 용어는 외국법령의 계수와 새로운 전문영역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의 부족으로 매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학문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서 살펴볼 때에도 매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어학계는 물론 법학계도 이러한 전문용어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최근의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법령이 한글화와 순화된 법령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순화법령의 적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교육 관련법령에 순화와 정비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권위적인 풍토가 법령의 문장과 용어에도 많이 표현됨으로써 보다 시급한 순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이에 모든 교육관련법령의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개인적인 연구역량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학교관련 법령에 관하여 그 순화기준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순화정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교육관련 법령의 순화와 정비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 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교육관련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 Ⅱ. 법령용어와 문장순화의 방향성

### 1. 한자의 순화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한자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법률적인 언어의 창조도 말할 것도 없이 한학에 소양 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한자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이나 그곳에는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령용어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한자의 사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과 법규범 사이에 표리관계가 형성되어 법률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생활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형성하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한자어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경우에 오히려 뜻이 모호해지거나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혹은 그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아울러 우리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의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어화』와 『일반국민의 법으로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예를 들어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반드시 ‘の’로 연결시키며, 3번까지의 ‘の’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가 2회 이상 반복되어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면 수식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

1)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1-12면.

### 3. 문장의 순화

#### 1) 주어 생략된 경우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국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장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법조문에서의 주어는 그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서는 가급적 주어를 갖출 필요가 있다.

####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법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3) 조사의 순화

법률의 조문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 불구하고’를 ‘~에 불구하고’라고 쓰거나, 여격 조사 ‘~에게’를 ‘~에’로 쓴 경우, 주격 조사 ‘~이/가’를 관형격 조사 ‘~의’로 쓴 경우 등이 특히 빈번하다.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

## II. 법령용어와 문장순화의 방향성

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법조문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의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의+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주술호응은 의미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국회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빈번하다. 부정확한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국회법에서도 체언형의 문체로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법률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문장을 동사구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사구 표현은 ‘~음을’, ‘~르 것을’, ‘~함에는’ 등이 있다.

###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국회법 조문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문어체 문장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회법의 입법 당시의 언어습관과 이에 따른 입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어체의 법조문은 일반국민들이 법규범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판결문과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국회법의 문체를 모범으로 하여 문어체 문장을 답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언어환경과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어체로 된 법조문은 가급적 평이하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 1.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정비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려면
~하고자 하는	~하려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필요하면
당해	해당
제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0항에 따라서
제0조의 규정에 의한	제0조에 따른
	제0조에서 규정한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령의 범위 안에서
~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에 따라서
	~령으로
法습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령에 따라서
이내에	안에
조장(助長) <sup>2)</sup>	활성화
조성	활성
구성하는 협의체를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할(統轄) <sup>3)</sup>	관할(管轄)
시간강사	시간제 교원
교무	학교업무
학년도	학업연도
이수(履修) <sup>4)</sup>	마무리
도야(陶冶) <sup>5)</sup>	--
내지	~부터 ~(까지)
4年 내지 6年으로	4년에서 6년까지로(부터~까지의 예외)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현행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대용(代用) <sup>6)</sup>	--
시책(施策) <sup>7)</sup>	정책
사인(私人)	개인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의
병설(竝設) <sup>8)</sup>	함께 설립 <sup>9)</sup>
~에 준하는	~와 같은
~에 준하여	~에 맞추어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교육하는 유아의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지도(指導) <sup>10)</sup>	관리
장학지도	장학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에 필요한 사항은
소원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의 취학이 곤란하면
독려[督勵] <sup>11)</sup>	장려 [獎勵] <sup>12)</sup>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로(원인으로)
학교에는	학교는 <sup>13)</sup>
사서(교사)	도서(교사)
통칙(通則) <sup>14)</sup>	일반원칙
이관(移管) <sup>15)</sup>	옮기다
가격사정(價格査定) <sup>16)</sup>	가격결정
개시(開始)	시작
지역사회 인사 <sup>17)</sup>	지역주민
	지역대표
	지역주민대표
유사한	비슷한

1. 법령용어에 대한 순화정비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數회에 걸쳐	여러 번
昂揚함으로써	높임으로써
관할청 <sup>18)</sup>	관할관청
자산 [資産] <sup>19)</sup>	재산
지장이 없는	방해되지 않는
經理하여야 한다 <sup>20)</sup>	경영관리를 한다
출자 <sup>21)</sup>	자산출연→재산기부
간(間)서명(?), 간(間)인 <sup>22)</sup>	걸친 서명, 걸친 도장
호선	선택
비치(備置) <sup>23)</sup>	갖춤, 갖추어 둠
備置하여야 한다	갖추어 둔다
備置할 帳簿	갖추어 둔 장부
폐질	치료불능질병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을 하려면
격감으로 인하여	급격한 감소로
~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어려우면
동전(同前)	앞 조(항)와 같음
提議할 것을	의의를 제기할 것을
教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진흥에 필요하면
團體에 대하여	단체에게
各號의 1에	각 V 호의 어느 하나에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이 있으면
支障 <sup>24)</sup> 이 있을 때	방해를 줄 때
~에게 이를 準用한다	~에게도 적용한다
~에 있어서는	~(은)는
~에 관하여는	~(은)는
~으로 하여금	~에게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현 행 법 령	순화정비기준(예시)
~에 한한다.	~에만 적용한다.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25)</sup>	앞 서술문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설명
견책(譴責) <sup>26)</sup>	질책(叱責) <sup>27)</sup>
배치되는	어긋난
근속한	계속 근무한

- 2) [명사]힘을 도와서 더 자라게 함.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예:범죄의 조장>
- 3) [명사]모두 거느려 다스림.
- 4) [명사]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
- 5) [명사] 1 도기를 만드는 일과 죄를 주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2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용어의 순화필요성이 있으나 적절한 순화용어에 관한 의견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6) [명사]대신하여 다른 것을 씀. 또는 그런 물건.  
→ 용어의 순화필요성이 있으나 적절한 순화용어에 관한 의견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7) [명사] 어떤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
- 8) [명사]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한곳에 갖추거나 세움.
- 9) 조문명에서는 병설로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뜻을 명확히 씀.
- 10) [명사] 1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 행정기관인 장관과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를 지도한다는 개념은 매우 권위적이고 행정중심적인 사고방식임.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는 관리·감독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 교사의 학생지도(0)
- 11) [명사]감독하며 격려함.
- 12) [명사]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
- 13) 학교는 법인으로 주체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에는’은 적절하지 않음.
- 14) [명사]일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 15) [명사]관찰을 옮김. 또는 옮기어 관찰함.
- 16) 사정(査定: [명사]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함).
- 17) 인사(人士 : [명사]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 활동이 많은 사람).
- 18) <해설> 관찰청은 행정부서 중 ‘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찰하는 (행정)관청’임을 법문에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임.
- 19) [명사] 1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으로 대별된다. ≡ 자재(資財). 2 소득을 축적한 것. 3 <법률>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有價物)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 <해설> ‘자산’은 일반적으로는 ‘재산’과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 같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재산’으로 순화하여도 무방함.

## 2. 법령문장에 대한 순화정비 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③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1안 : ③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안 : ③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가 학교의 폐지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해설> 경리 [經理][명사]1 일을 경영하고 관리함.(경영관리) 2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 또는 그 부서나 사람. (경리사무) 일반적으로 ‘경리’는 2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법문에서 ‘경리’는 ‘경영관리’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 21) <해설>출연 [出捐] [명사] 1 금품을 내어 도와줌. 2 <법률>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일반적으로 법률상 ‘출연’을 기부와는 다른 별도의 행위로 쓰이는 것과 같이 설명하지만 그 의미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짐. 따라서 ‘출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함.
- 22) 간인 [間印] [명사] 함께 묵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음. 또는 그 도장. ‘사잇도장’, ‘거털도장’, ‘걸침 도장’, ‘이음 도장’으로 순화.
- 23) [명사]마련하여 갖추어 둠.
- 24) <지장 [支障] [명사]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 25) <예> ~자는 ~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사람은 ~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임명될 수 있다.**
- 26) 견책(譴責) [명사]1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 감발(勘發). 2 <법률>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
- 27) 질책(叱責) [명사]꾸짖어 나무람. ≒ 초양(誚讓).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p>第 5 條 (指導·監督) 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 6 條 (學校規則) ②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則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教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up>28)</sup></p>	<p>제1안 : ②제1항에 따라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학교의 장은 14일 안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제2안 : ②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14일 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칙의 제정</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에 관한 중요한 개정 사항</li> <li>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 사항</li> </ol>
<p>③學則이 정하는 學點 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  단축할  수  있다.</p>	<p>③√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p>

2. 법령문장에 대한 순화정비 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p>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제1안 :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p>
	<p>제2안 : ①√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다.</p>
<p>(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한다.</p>	<p>(입학√나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로 한다.</p>
	<p>(입학√나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다.</p>
<p>義務教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教育對象者가 義務教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으로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못한다.</p>
	<p>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적극적 의미로의 전환&gt;</p>
<p>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p>	<p>징계 등의 방법으로</p>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p>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p>	<p>학생을 징계하려면,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p>	<p>교감이 없는 학교는</p>
<p>學校에는 教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외에 產學兼任敎師·名譽敎師 또는 講師 등을 두어 學生의 敎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하면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하면, 학교는 제 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에게 교육하게 할 수 있다.</p>
<p>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29)</p>	<p>학교의 학업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p>
<p>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p>	<p>교육목적에 필요하여</p>
<p>매년 3月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月 末일에 종료한다</p>	<p>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이다</p>
<p>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p>	<p>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lt;순화의견&gt;</p> <p>&lt;법문장의 오류&gt; : 학생이 미성년자이</p>

2. 법령문장에 대한 순화정비 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면, 부모 등 보호자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전에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법령에서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就學年齡을 초과한 者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난 사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하면
障礙등으로 인하여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	장애 V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긴급한 원인이 있으면
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이 법에서 “학교법인”은 이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第3條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 다만, 初·中等教育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教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30)</sup>	제 3 조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V 등) ① V 학교법인은 다음 각 V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52 조 V 제 2 항에 따라서 고용근로 V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教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私立學校의 經營에 充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sup>31)</sup>	학교법인은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V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Ⅲ. 문장과 용어의 순화정비 예시기준

현행 법령	순화정비기준(예시)
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定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의 결원보충을 없으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유가 없어지도록 노력한다.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出捐 또는 寄贈한 者	기부 또는 증여한 사람
다른 회계에 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 줄 수 없다.
學級·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급·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그 직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8) <해설> 복잡한 문장나열을 보다 단순하게 함. ‘보고’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결정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독립된 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은 행정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통지)으로 충분함(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 29) <해설> · 학년도 → 학업연도<보다 익숙한 표현을 씀>  
· ‘부터’는 이미 ‘시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30) <해설> 이중부정은 강조를 위한 것이지만 법문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3조 역시 긍정문으로 순화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문으로 보인다. 또한 단서 역시 주어틀 서술하는 문장이 주어의 앞과 뒤에 있는 관계로 주체가 불분명하며, 술어 역시 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체를 술어 앞으로 하여 법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31) <해설>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와 ‘그 수익을’은 이미 법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중복적인 설명이 되며, 이에 따라 오히려 법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 부 록

## 고등교육법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第1章 總 則</p>	<p>제1장 총 칙</p>
<p>第1條 (目的) 이 법은 『교육기본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高等教育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學校의 종류) 高等教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大學</li> <li>2. 産業大學</li> <li>3. 敎育大學</li> <li>4. 專門大學</li> <li>5. 放送大學·통신大學·방송통신大學 및 사이버大學(이하 “원격大學”이라 한다)</li> <li>6. 技術大學</li> <li>7. 各種學校</li> </ol>	<p>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 학</li> <li>2. 산업대학</li> <li>3. 교육대학</li> <li>4. 전문대학</li> <li>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li> <li>6. 기술대학</li> <li>7. 각종 √ 학교</li> </ol>
<p>第3條 (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p>	<p>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p>
<p>第4條 (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등</p>	<p>제4조 (학교의 설립 √ 등) ① √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p>

현행 법령	순화안
<p>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p> <p>②國家외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③公·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第5條 (指導·監督) ①學校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에 대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相關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p> <p>第6條 (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 또는  改正할 수 있다.</p> <p>②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則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教育人的  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국가√외의 사람이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5 조 (관리·감독) 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相關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p> <p>제 6 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을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 학교의 장은 14일 안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③學則의 기재사항, 制定 및 改正 節次,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7條 (教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學校는 教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 및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p>	<p>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서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p>
<p>第8條 (實驗實習費등의 지급) 國家는 學術·學問研究의 振興과 教育의 研究를 助長하기 위하여 實驗實習費, 研究助成費, 또는 獎學金의 지급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활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第9條 (學校間 상호협조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상호간의 敎員交流와 研究協力の 活性化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9조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第10條 (學校協議體)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 및 원격대학등은 高等教育의 발전을 위하여 각 學校의 代表者로  구성하는 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제10조 (학교협의체)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11條 (授業料等)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와 <u>기타</u>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p> <p>②授業料 <u>기타</u>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教育人的資源部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 (평가) ①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p> <p>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u>정부가</u>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p> <p>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p>	<p>제11조 (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u>그 밖에</u> 납부금(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p> <p>② 수업료 <u>그 밖에</u>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 (평가) ①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p> <p>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p> <p>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p>

현행 법령	순화안
<p>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2章 學生과 敎職員</p> <p>第1節 學生</p> <p>第12條 (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第13條 (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教育상  필요한 때에는 <u>法令과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學生을 懲戒할 수 있다. 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p> <p>第2節 敎職員</p> <p>第14條 (敎職員의 구분)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 및 원격대학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②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③學校에는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과 助敎를 둔다.</p>	<p>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학생과 교직원</p> <p>제1절 학생</p> <p>제12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u>교육에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u>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u>학생을 징계하려는 학교의 장은</u>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2절 교직원</p> <p>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④各種學校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필요한 敎員, 職員 및 助教(이하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p> <p>第15條 (敎職員의 임무) ①總長 또는 學長은 校務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p> <p>②敎員은 學生을 教育·指導하고 學問을 研究하되, 學問研究만을 全擔할 수 있다.</p> <p>③行政職員등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u>기타</u>의 事務를 담당한다.</p> <p>④助教는 教育·研究 및 學事に 關한 事務를 보조한다.</p> <p>第16條 (敎員·助教의 資格基準등) 敎員 및 助教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 및 資格認定에 關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17條 (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 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u>時間講師</u>등을 두어 教育 또는 研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學校</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通則</p> <p>第18條 (學校의 名칭) ①學校의 名칭은 國立學校의  경우에는 大統領令</p>	<p>④∨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規定에  맞추어  필요한 敎원, 직원 및  조교(이하 “敎직원”이라 한다)를 둔다.</p> <p>제15조 (敎직원의  임무) ①∨총장 또는  학장은 <u>학교업무</u>를  관할하고, 소속 敎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p> <p>②∨敎원은  학생을  教育·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p> <p>③∨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u>그 밖</u>의  사무를  담당한다.</p> <p>④∨조교는  教育·연구 및  학사에  關한  사무를  보조한다.</p> <p>제16조 (敎원·조교의  자격기준∨등) 敎원 또는 <u>조교</u>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p> <p>제17조 (겸임敎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제14조∨제2항의  敎원∨외에  겸임敎원·명예敎수 및 <u>시간제 敎원</u>∨등을  두어  教育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통칙</p> <p>제18조 (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공립</p>

현행 법령	순화안
<p>으로 정하고, <u>公立學校의 경우에</u>는 당해 <u>地方自治團體의 條例</u>로 정하며, <u>私立學校의 경우에는</u> 당해 <u>學校法人의 定款</u>으로 정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u>學校 設立目的의 特性</u>을 나타내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u>學校의 종류</u>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p> <p>第19條 (學校의 組織) ①學校는 그 <u>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u>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p> <p>②學校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u>國立學校의 경우에는</u> 大統領令 및 學則으로 정하고, <u>公立學校의 경우에는</u> 당해 <u>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및 學則</u>으로 정하며, <u>私立學校의 경우에는</u> 당해 <u>學校法人의 定款 및 學則</u>으로 정한다.</p> <p>第20條 (學年度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일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u>학년도</u>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p> <p>②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p>	<p>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p> <p>②V 제1항에 따른 명칭결정은 해당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V 안에서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p> <p>제19조 (학교의 조직) ①V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V 안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p> <p>②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u>국립학교는 대통령령 및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u>으로 정한다.</p> <p>제20조 (학업연도V등) ①V 학교의 <u>학업연도</u>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u>학업연도</u>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p> <p>②V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V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V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21條 (教育課程의 운영) ①學校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의 大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教育課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敎科의 履修는 評點 및 學點制 등에 의하여, 學點당 필요한 履修時間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2條 (授業등) ①學校의 授業은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晝間授業·夜間授業·季節授業·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등의 方法에 의하여 할 수 있다.</p> <p>②學校는 學生의 現場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p>	<p>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교과목의 <u>마무리</u>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지만, 학점당 필요한 <u>마무리 시간</u>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에 따라서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을 통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서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학교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1. <u>국내외</u>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p>

현행 법령	순화안
<p>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p> <p>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p> <p>②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p> <p>第23條의2 (編入學) 學校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點을 學則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p> <p>1. 國內·외의 다른 學校에서 취득한 學點</p> <p>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學點</p>	<p>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으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의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마무리하여 취득한 학점</p> <p>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마무리한 경우</p> <p>②∨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p> <p>제23조의2 (편입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의 기준이상 취득한 사람에게 학교는 학칙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p> <p>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p> <p>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한 학점</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3. 『평생교육법』에 <u>의하여</u> 취득한 學點</p> <p>第24條 (分校) 學校의 設立·經營者 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u>의하</u> <u>여</u>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p> <p>第25條 (研究施設등) 學校에는 研究 所등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 한 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p> <p>第26條 (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이 <u>정하는 바에 의하여</u> 學生외의 者 <u>를 대상으로 하는</u> 公開講座를 둘 수 있다.</p> <p>第27條 (外國博士學位의 申告) 外國 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大統領 令이 定하는 바에 <u>의하여</u> 教育人的 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第 2 節 大學 및 産業大學</p> <p>第 1 款 大 學</p> <p>第28條 (目的) 大學은 人格을 도야하 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발전에 필요 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應用 方法을 敎授·研究하며, 國家와 人 類社會에 <u>공헌함을</u> 目的으로 한다.</p> <p>第29條 (大學院) ①大學(産業大學· 教育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p>	<p>3. 『평생교육법』에 <u>따라서</u> 취득한 학점</p> <p>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 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 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5조 (연구시설∨등) 학교에는 연 구소∨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p> <p>제26조 (공개강좌) 학교는 <u>학칙에 따</u> <u>라서</u> 학생∨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p> <p>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 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u>사람은</u> 대 통령령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2 절 대학 및 산업대학</p> <p>제 1 관 대 학</p> <p>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 (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 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 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u>이에 이바지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9조 (대학원)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p>



현행 법령	순화안
<p>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p> <p>②大學院에 學位課程외에 필요에 따라 學位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研究課程을 둘 수 있다.</p> <p>③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研究課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①대학원은 <u>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li> </ol> <p>②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p>	<p>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p> <p>②∨대학원에는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가 없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p> <p>③∨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의2 (대학원의 종류) ①∨대학원은 <u>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가 주된 교육목적인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이 주된 교육목적인 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이 주된 교육목적인 대학원</li> </ol> <p>②∨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p>

현행 법령	순화안
<p>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p> <p>③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第30條 (大學院大學) 특정한 분야의 <u>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이하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u></p> <p>第31條 (授業年限) ①大學(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授業年限은 <u>4年 내지 6年으로 한다.</u> 다만,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大學院의 授業年限은 <u>다음 各號와 같다.</u></p> <p>1. 碩士學位課程 및 博士學位課程 : 각각 2年 이상</p> <p>2.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 : 4年 이상</p> <p>③學則이 정하는 學點 이상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u>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年限을 단축할 수 있다.</u></p>	<p>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p> <p>③∨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30조 (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u>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u></p> <p>제31조 (수업연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u>4년에서 6년까지로 한다.</u>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u>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p> <p>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 이상</p> <p>③∨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u></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32條 (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원격대학·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의 學生定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學則으로 정한다.</p> <p>第33條 (入學資格)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②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③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第34條 (學生의 選拔方法) ①大學(産業大學·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의 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중에</p>	<p>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 (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p> <p>②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p> <p>③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p> <p>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p>

현행 법령	순화안
<p>서 <u>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에 의하여 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의 方法, 學生選拔日程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③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入學銓衡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規定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p> <p>⑤제4항의 規定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規定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⑥제4항의 規定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規定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p>	<p>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p> <p>②V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V 교육인적자원부V 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p> <p>④V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인적자원부V 장관이 정하는 가벼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p> <p>⑤V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⑥V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V 장관이 정하는 20시간 안의 인성</p>

현행 법령	순화안
<p><u>라 20시간 이내의</u> <u>인성교육을</u> <u>이수하여야</u> 한다.</p> <p>第35條 (學位의 수여) ①大學(産業大學·教育大學을 포함하며, 大學院大學을 제외한다)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②大學院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해당 課程의 碩士學位 또는 博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③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課程이 統合된 課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者로서 學則이 정하는 碩士學位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博士學位課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p> <p>⑤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6條 (時間制 登錄) ①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第33條第1項의 入學資格이 있는 者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當해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者의 選拔方法 및 登錄人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교육을 <u>마무리</u>하여야 한다.</p> <p>제35조 (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u> 사람에게 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u>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③∨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u>사람으로서</u>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u>사람</u>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④∨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⑤∨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 (시간제 등록) ①∨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u>사람</u>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u>해당</u>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u>사람의</u>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u>등</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2款 産業大學</p> <p>第37條 (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學術 또는 전문적인 知識·技術의 研究와 鍊磨를 위한 教育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u>者에게</u> 高等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여 國家와 社會의 발전에 <u>기여할</u>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38條 (授業年限) 産業大學의 授業年限 및 在學年限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u>아니한다</u>.</p> <p>第39條 (教科目履修의 인정) 産業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은 學則이 <u>정하는</u> <u>바에 의하여</u> 다른 學校·研究機關 또는 産業體등에서 행한 教育·研究 또는 實習등을 특정한 教科目的 <u>履修로</u> 인정할 수 있다.</p> <p>第40條 (産業體 委託教育) ①産業大學(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포함한다)로부터 委託받아 教育을 실시하거나 産業體에 委託하여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體 委託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제2관 산업대학</p> <p>제37조 (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u>사람에게</u>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u>이바지할</u>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8조 (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u>않는다</u>.</p> <p>제39조 (교과목∨마무리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u>학칙으로</u>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u>마무리로</u> 인정할 수 있다.</p> <p>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3節 教育大學등</p> <p>第41條 (目的) ①教育大學은 初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②大學의 師範大學(이하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의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③大學에는 특별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敎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教育科(이하 “教育科”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第42條 (教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①教育大學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p> <p>②教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p> <p>第43條 (綜合敎員養成大學)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需要가 있는  경우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大學 및 師範大學의 目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大學(이하 “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p> <p>②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中 教育大學에  관한 規定은 綜合敎員養成大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제3절 교육대학 등</p> <p>제41조 (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V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p> <p>③ V 특별히 필요하면, 대학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V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p> <p>② V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p> <p>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① V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V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V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도 준용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44條 (目標) 教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在學生이 <u>다음 各號의 目標</u>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育者로서의 확고한 價値觀과 건전한 敎職倫理를 갖추도록 함</li> <li>2. 敎育의 理念과 그 구체적 實踐方法을 體得하게 함</li> <li>3. 敎育者로서의 資質과 力量을 生涯에 걸쳐 스스로 伸張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li> </ol>	<p>제44조 (목표) 敎育大學·사범大學·종합敎원양성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u>다음 중 어느 하나의 目標</u>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育者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敎職윤리를 갖추도록 함</li> <li>2. 敎育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을 체득하게 함</li> <li>3. 敎育者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li> </ol>
<p>第45條 (附設學校) ①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는 <u>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在學生의 現場研究 및 實習을 위한 學校를 附設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育大學 : 初等學校</li> <li>2. 師範大學 : 中學校 및 高等學校</li> <li>3. 綜合敎員養成大學 :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li> </ol> <p>②<u>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u></p> <p>③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 <u>필요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學校외에 幼</u></p>	<p>제45조 (부설학교) ①√敎育大學·사범大學 및 綜合敎원양성大學에는 <u>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實習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育大學 : 初등학교</li> <li>2. 사범大學 : 중학교 및 高等학교</li> <li>3. 綜合敎원양성大學 : 初등학교·중학교 및 高等학교</li> </ol>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國·公·사립의 初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u>부설학교로 할 수 있다.</u></p> <p>③√敎育大學·사범大學 및 綜合敎원양성大學에 <u>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외에 유치원·초</u></p>



현행 법령	순화안
<p>稚園·初等學校 및 特殊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p> <p>④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p> <p>第46條 (臨時敎員養成機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臨時敎員養成機關 및 臨時敎員研修機關을 設置하거나 <u>이의 設置를 認可</u>할 수 있다.</p> <p>第4節 專門大學</p> <p>第47條 (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各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知識과 理論을 敎授·研究하고 才能을 鍊磨하여 國家社會의  발전에  필요한 專門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48條 (授業年限) ①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다만, <u>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u>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p> <p>④√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p> <p>⑤√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p> <p>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교원의 수요·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 <u>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u>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u>설치를</u> 인가할 수 있다.</p> <p>제4절 전문대학</p> <p>제47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u>각 분야의</u>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u>재능을</u>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의 <u>양성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48조 (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u>3년의 수업연한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u>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p> <p>第49條 (專攻深化課程) 專門大學에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의 繼續教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攻深化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p> <p>第50條 (學位의 수여) ①專門大學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②專門學士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p>	<p>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u>사람의</u>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50조 (학위의 수여) ①√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 사람에게</u>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 사람에게</u>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u>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u>사람으로서</u></p>

현행 법령	순화안
<p>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u>자</u>로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u>수여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1條 (編入學) 專門大學을 <u>卒業한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者는</u> 大學·産業大學 또는 원격대학에 編入學할 수 있다.</p> <p>第 5 節 원격대학</p> <p>第52條 (目的) 원격대학은 國民에게 情報·通信媒體를 통한 遠隔教育으로 高等教育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동시에 열린 學習社會를 구현함으로써 平生教育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53條 (원격대학의 課程 및 授業年限) ① 원격대학에는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u> 둘 수 있다. ②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u>專門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u></p>	<p>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u>사람으로</u> 한다.</p> <p>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u>수여에</u>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 (편입학) 전문대학을 <u>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u>은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p> <p>제 5 절 원격대학</p> <p>제52조 (목적)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 원격대학에는 <u>대통령령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u>을 둘 수 있다. ②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u>전문학사학위과정은 2년, 학사학위과정은 4년을 그 수업연한으로 한다.</u></p>

현행 법령	순화안
<p>③ <u>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u></p> <p>第54條 (學位의 수여) ①원격대학의 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②원격대학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6 節 技術大學</p> <p>第55條 (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専門적인 知識·技術의 研究·鍊磨를 위한 教育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56條 (技術大學의 課程 및 授業年限) ①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課程 및 學士學位課程을 둔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課程의 授業年限은 각각 2年으로 한다.</p>	<p>③ <u>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학사학위과정은 4년 이상을 그 수업연한으로 한다.</u></p> <p>제54조 (학위의 수여) ①√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 사람에게</u>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u>마무리한 사람에게</u>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절 기술대학</p> <p>제55조 (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u>전문인력의 양성</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p> <p>②√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은 2년을 그 수업연한으로 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57條 (入學資格등) ①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u>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u>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p> <p>②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u>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u>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産業體에 근무하고 있는 者로 한다.</p> <p>③技術大學의 學生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選拔하되, 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則으로 정한다.</p>	<p>제57조 (입학자격등)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u>사람으로</u> 한다.</p> <p>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서 이와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u>사람으로</u> 한다.</p> <p>③기술대학의 학생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학칙으로 정한다.</p>
<p>第58條 (學位의 수여) ①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專門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②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수여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位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58조 (학위의 수여)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한 <u>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u></p> <p>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마무리한 <u>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u></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第7節 各種學校</p> <p>第59條 (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1의 學校와 유사한 教育機關을 말한다.</p> <p>②各種學校는 第2條第1號 내지 第6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③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운영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④第35條第1項·第5項 및 第50條의 規定은 大學 및 專門大學에 준하는 各種學校중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 인정되는 學校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정을 받은 各種學校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⑤各種學校에 關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教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p>	<p>제7절 각종V학교</p> <p>제59조 (각종V학교) ①V각종V학교는 제2조V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학교와 비슷한 교육기관을 말한다.</p> <p>②V각종V학교는 제2조V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③V교육인적자원부V장관은 국립 각종V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V제35조V제1항·제5항 및 제50조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V학교V중 상급 학위과정으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V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V학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p> <p>⑤V그 밖에 각종V학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第4章 補則 및 罰則</p> <p>第60條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 및 學事 기타 사항에 關하여 教育關係法令 또는 이에</p>	<p>제4장 보칙 및 벌칙</p> <p>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V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그 밖의 사항에 關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p>

현행 법령	순화안
<p><u>의한</u>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u>경우</u>에는 기간을 정하여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是正 또는 變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u>教育人的資源部長官</u>은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u>者</u>가 正當한 사유없이 지정된 <u>기간내</u>에 이를 이행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u>바에</u>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正지하거나 當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科의 廢止 또는 學生의 모집정지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p>第61條 (休業 및 休校命令)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u>인정하는</u>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p> <p>③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u>의한</u>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u>아니하거나</u> 특별히 긴급한 <u>사유</u>가 있는 <u>경우</u>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p> <p>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u>의하여</u>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정지되며, 第</p>	<p>칙을 위반한 <u>경우</u>, 教育인적자원부 V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設立·經營者 또는 학교의 장에게 是正 또는 變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V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사람이 正當한 사유 V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u>않으면</u>, 教育인적자원부 V장관은 大統領령에 따라서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V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61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V교육인적자원부 V장관은 재해 V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u>경우</u>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②V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V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p> <p>③V교육인적자원부 V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u>따른</u>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u>않거나</u>,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u>있으면</u>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V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 V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p>

현행 법령	순화안
<p>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 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p> <p>第62條 (學校등의 閉鎖) ①教育人的 資源部長官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의 學校法人에 대하여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li> <li>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법 또는 기타 教育關係法令에 의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li> <li>3. 休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 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p>	<p>따라서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 Ⅴ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p> <p>제62조 (학교 Ⅴ 등의 폐쇄) ① Ⅴ 학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Ⅴ 장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게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Ⅴ 장관의 명령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경우</li> <li>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li> </ol> <p>② Ⅴ 교육인적자원부 Ⅴ 장관은 제4조 Ⅴ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현행법령	순화안
<p>第63條 (聽聞)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등의 閉鎖를 <u>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3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2조에 따라서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를 <u>명하려면</u>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교육기본법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第1章 總 則</p>	<p>제1장 총 칙</p>
<p>第1條 (目的) 이 법은 教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 教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教育理念)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 均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3條 (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教育받을 權利를 가진다.</p>	<p>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國民은 性別, 宗教, 신념, 人種, 사회적 신분,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등을 이유로 <u>教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u></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p>	<p>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u>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u></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u>시책</u>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第 5 條 (교육의 自主性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教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教育의 실시를 위한 <u>施策</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등은 <u>法令</u>이 정하는 바에 의하 <u>여</u>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p> <p>第 6 條 (교육의 中立性) ①教育은 教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u>아니된다</u>.</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教를 위한 宗教教育을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第 7 條 (教育財政)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教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u>施策</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教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따로 <u>法律</u>로 정한다.</p>	<p>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u>정책</u>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 5 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V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V 등은 <u>법령</u>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 6 조 (교육의 중립성) ① V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과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u>안된다</u>.</p> <p>② 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u>안된다</u>.</p> <p>제 7 조 (교육재정) ① V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V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u>필요</u>한 사항은 따로 <u>법률</u>로 정한다.</p>

현행법령	순화안
<p>第8條 (義務教育) ①義務教育은 6年の 初等教育 및 3年の 中等教育으로 한다.</p> <p>②모든 국민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제8조 (의무교육) ①<u>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u></p> <p>②<u>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第9條 (學校教育) ①幼兒教育·初等教育·中等教育 및 高等教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p> <p>②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教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教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學校教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的 涵양을 포함한 全人의 教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④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教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제9조 (학교교육) ①<u>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u></p> <p>②<u>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u>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u><u>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u></p> <p>④<u>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p>
<p>第10條 (社會教育) ①國民의 平生教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教育은 獎勵되어야 한다.</p> <p>②社會教育의 履修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教育의 履修로 인정될 수 있다.</p> <p>③社會教育施設의 종류와 設立·경영 등 社會教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제10조 (사회교육) ①<u>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u></p> <p>②<u>사회교육의 마무리는 법령에서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마무리로 인정될 수 있다.</u></p> <p>③<u>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p>
<p>第11條 (學校등의 設立)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教育施設을 設立·경영한다.</p>	<p>제11조 (학교등의 설립) ①<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u></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法人 또는 私人은 <u>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學校 및 社會教育 施設을 設立·경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教育當事者</p> <p>第12條 (學習者) ①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基本적 人權은 學校教育 또는 社會教育의 過程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p> <p>②教育內容·教育方法·教材 및 教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最大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强구되어야  한다.</p> <p>③학생은 學習者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教育·研究  活動을  방해하거나 學內의 秩序를  亂란하게  하여서는  <u>안된다</u>.</p> <p>第13條 (保護者) ①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  成長하도록  教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p> <p>②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의  教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第14條 (敎員) ①學校教育에서  敎員의  専門성은   존중되며,  敎員의  經</p>	<p>②법인 또는 사인은 <u>법률에 따라</u>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육당사자</p> <p>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u>사회교육 과정에서</u> 존중되고 보호된다.</p> <p>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p> <p>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u>안된다</u>.</p> <p>제13조 (보호자) ①√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p> <p>②√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p>

현행 법령	순화안
<p>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 그 身分은 보장된다.</p> <p>②敎員은 教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品性과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⑤敎員은 <u>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p> <p>⑥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第15條 (敎員團體) ①敎員은 상호 協同하여 教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노력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p> <p>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u>자질의 향상에</u>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u>안된다</u>.</p> <p>⑤√교원은 <u>법률에 따라서</u>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p> <p>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u>향상을 위하여</u>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u>조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16條 (學校등의 設立·經營者) ① 學校 및 社會教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u>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教育을 위한 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등을 확보하고 이를 運用·관리한다.</p> <p>②學校의 長 및 社會教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u>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學習者를 선정·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등 敎育의 過程을 記錄·관리한다.</p> <p>③學校 및 社會教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사전에 公開되어야 한다.</p>	<p>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①∨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u>법령에 따라서</u> 教育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p> <p>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u>법령에 따라서</u>  학습자를 선정·敎育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등 敎育의 過程을 기록·관리한다.</p> <p>③∨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敎育內容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p>
<p>第17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教育施設을 <u>指導·監督</u>한다.</p>	<p>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國家 및 地方자치단체는 學校 및 社會教育시설을 <u>관리·감독</u>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3 章 敎育의 振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敎育의 진흥</p>
<p>第17條의2 (男女平等敎育의 증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u>施策</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u>규정에 의한</u> 學校 및 社會敎育 시설의 設立·經營者는 <u>敎育을 실시함에 있어</u>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p>	<p>제17조의2 (남녀평등敎育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u>따른</u> 學校 및 社會敎育 시설의 設立·經營者는 <u>敎育에 있어서</u>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p>

현행 법령	순화안
<p>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등 女性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教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學校教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教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教育審議會를 둔다.</p> <p>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教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시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u>시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시책</u>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p>	<p>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u>안된다</u>.</p> <p>③V제1항에 따른 정책에는 체육·과학기술V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V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V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V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V교육심의회를 둔다.</p> <p>⑤V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V교육심의회 위원<sup>의</sup> 자격·구성·운영V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정책</u>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p>



현행 법령	순화안
<p>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p>	<p>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감안하는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p>
<p>第18條 (特殊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礙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教育的 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教育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19條 (英才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등의 분야에서 才能이 특히 뛰어난 者의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 (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20條 (幼兒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教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 (유아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21條 (職業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을 통하여 職業에 대한 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 (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22條 (科學·技術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教育을</p>	<p>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p>

현행 법령	순화안
<p><u>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진흥에 필요한 <u>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u>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u>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第23條 (교육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教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한 教育의 지원과 教育情報産業의 육성등 教育의 情報化에 관하여 필요한 <u>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u>정보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당해</u>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p>	<p>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 제1항에 <u>따른</u>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해당</u>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u>아니된다</u>.</p>	<p>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u>안된다</u>.</p>
<p>第24條 (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研究·振興하기 위하여 學術文化施設 設置 및 研究費 지원등의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등의 <u>정책</u>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25條 (私學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多樣하고 特性있는 設立目的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p>
<p>第26條 (평가 및 認證制度) ①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通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에 관한 制度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教育課程등 教育制度和 相互連繫되어야 한다.</p>	<p>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①∨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p>
<p>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27條 (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第28條 (獎學制度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이유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 獎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外에서 專攻하거나 研究하는 者에게 學費 기타 必要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獎學金 및 學費補助金등의 지급방법 및 節次와 지급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등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제28조 (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敎育을 받기 곤란한 人을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교원양성敎育을 받는 사람과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人에게 학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人의 자격 및 의무∨등에 必要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29條 (國際敎育) ①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國際化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必要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p>	<p>제29조 (국제敎育)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外國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必要한 학교敎育 또는 사회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必要한 政策을 强구하여야 한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③國家는 學問研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教育·研究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등과의 教育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유아교육법

현행 법령	순화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u>교육기본법 제 9조의 규정</u>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u>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li> <li>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li> <li>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u>자로서</u>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u>자</u>를 말한다.</li> <li>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li>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li>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ol> <p>제 3 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u>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u>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u>정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li> <li>2.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li> <li>3.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u>사람으로서</u>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u>사람</u>을 말한다.</li> <li>4. “반일제”는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li>5. “시간연장제”는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li>6. “종일제”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ol> <p>제 3 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제 4 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u>소속하에</u>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 계획</li> <li>2. 유치원 및 보육시설<u>간의</u> 연계 운영</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u>부의하는</u> 사항</li> </ol> <p>②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u>,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u>자가</u>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li> <li>2.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u>추천하여</u>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u>자</u> 각 2인</li> </ol> <p>③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5 조 (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p>	<p>제 4 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u>따른</u>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u>소속 아래에</u>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 계획</li> <li>2. 유치원 및 보육시설√<u>사이의</u> 연계운영</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u>안건으로 부치는</u> 사항</li> </ol> <p>②√제1항에 <u>따른</u>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1명의</u> 위원으로 <u>구성하며</u>,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u>사람</u> 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li> <li>2.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이 <u>추천하고</u>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u>사람</u> 각 2명</li> </ol> <p>③√제1항에 <u>따른</u> 위원회의 구성 및 <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5 조 (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p>

현행 법령	순화안
<p>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p> <p>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 장 유치원의 설립 등</p> <p>제 7 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p> <p>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p> <p>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 장 유치원의 설립 등</p> <p>제 7 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p> <p>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p> <p>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u>사인</u>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p> <p>제 8 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u>설립하고자 하는 자는</u>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u>설립 기준을</u> 갖추어야 한다.</p> <p>②<u>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u>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u>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u>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u>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9 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u>병설될 수 있다.</u></p> <p>제10조 (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u>당해</u>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p>	<p>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p> <p>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p> <p>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u>개인</u>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p> <p>제 8 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u>✓</u>유치원을 <u>설립하려는 사람은</u>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의 <u>설립기준을</u> 갖추어야 한다.</p> <p>②<u>✓</u>사립유치원을 <u>설립하려는 사람은</u>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u>✓</u>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u>✓</u>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u>사람이</u>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의 <u>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u>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9 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u>함께 설립할 수 있다.</u></p> <p>제10조 (유치원<u>✓</u>규칙) ①<u>✓</u>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u>해당</u> 유치원을 <u>설립하려는 사람</u>을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u>✓</u>안</p>

현행 법령	순화안
<p>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u>자</u>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한다.</p>	<p>제11조 (입학나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u>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로 한다.</p>
<p>제12조 (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제12조 (학업연도 등) ①유치원의 학업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u>마지막</u> 날까지로 한다.</p>
<p>②유치원은 보호자의 <u>요구</u>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은 보호자의 <u>요청</u>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u>규정</u>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p>	<p>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u>따른</u>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p>

현행 법령	순화안
<p>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 (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6조 (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 국내에 체류중인</p>	<p>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 (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6조 (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은 국내에 체류중인</p>

현행 법령	순화안
<p>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제17조·제18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원장은 <u>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u>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원장은 <u>교육하고 있는 원아에게</u>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u>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u>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교육인적자원부령</u>으로 정한다.</p> <p>제18조 (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u>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u>을 받으며, 공·사립유치원은 <u>교육감의 지도·감독</u>을 받는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p>	<p>외국인 <u>자녀교육</u>을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math>\vee</math>유치원은 <u>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제17조·제18조<math>\vee</math>제2항·제19조·제22조·제24조부터 제27조까지</u>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②<math>\vee</math>외국인<math>\vee</math>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math>\vee</math>원장은 <u>교육하는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u>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math>\vee</math>원장은 <u>교육하는 원아에게</u>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math>\vee</math>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u>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u>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인적자원부령</u>으로 정한다.</p> <p>제18조 (관리·감독) ①<math>\vee</math>국립유치원은 <u>교육인적자원부<math>\vee</math>장관,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관리·감독</u>을 받는다.</p> <p>②<math>\vee</math>교육인적자원부<math>\vee</math>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p>

현행 법령	순화안
<p>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교직원</p> <p>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 (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p>	<p>위하여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9조 (평가) ①<input checked="" type="checkbox"/>교육인적자원부<del>장</del>관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input checked="" type="checkbox"/>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교직원</p> <p>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input checked="" type="checkbox"/>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u>않을</u> 수 있다.</p> <p>②<input checked="" type="checkbox"/>유치원에는 교원<del>외</del><input checked="" type="checkbox"/>외에 위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③<input checked="" type="checkbox"/>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 (교직원의 임무) ①<input checked="" type="checkbox"/>원장은 원무를 <u>관할</u>하고, 소속<del>교</del><input checked="" type="checkbox"/>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그 직무를 대행한다</u>.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p> <p>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p> <p>제22조 (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u>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u>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p>	<p>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u>어쩔 수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이 없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교사는 <u>법령에 따라</u> 원아를 교육한다.</p> <p>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p> <p>제22조 (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u>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u>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아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④제3항의 <u>규정에 따른</u>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u>규정에 따른</u>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p>⑤제3항 및 제4항의 <u>규정에 따른</u>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 및 교원의 <u>자격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강사 등) ①<u>유치원에는</u> 교육과정 운영상 <u>필요한 경우에</u> 제20조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u>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3항에 <u>따른</u>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u>따른</u>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p> <p>⑤∨제3항과 제4항에 <u>따른</u>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 및 교원의 <u>자격검정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강사 등) ①∨<u>유치원에</u> 교육과정 운영상 <u>필요하면</u> 제20조∨제1항에 <u>따른</u>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u>따라</u>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u>등에</u>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4 장 비 용</p>	<p>제 4 장 비 용</p>
<p>제24조 (무상교육) ①<u>초등학교 취학</u>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u>대통령령이 정하는</u> 바에 <u>따라</u>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②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무상교육에 <u>필요한</u>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24조 (무상교육) ①∨<u>초등학교 취학</u>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u>대통령령에 따라</u>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②∨제1항에 <u>따른</u> 무상교육에 <u>필요한</u>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u>부담하고</u>,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li> <li>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li> <li>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li> </ol> <p>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p>	<p>③Ⅴ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교육비용 등) ①Ⅴ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Ⅴ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Ⅴ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li> <li>2. 교육대상 유아간 『국민기초생활Ⅴ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여부</li> <li>3. 해당 지역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의 여부</li> </ol> <p>②Ⅴ제1항Ⅴ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Ⅴ제1항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p>



현행 법령	순화안
<p>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치원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li> <li>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li> </ol>	<p>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V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③V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p>제27조 (종일제 운영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V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8조 (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V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치원의 목적V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li> <li>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li> </ol>

현행 법령	순화안
<p>3. 제22조의 <u>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칙 및 벌칙</p> <p>제29조 (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u>의한</u>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u>정하는 바에 의하여</u>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u>관</u>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u>의한</u>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u>그</u>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u>그</u>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u>관</u>할청은 제1항의 <u>규정에 따른</u>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u>정당한 사유없이</u> 지정된 기간 <u>이내에</u> 이를 이행하지 <u>아니한 경우</u>에는 대통령령이 <u>정하는 바에 따라</u>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①<u>관</u>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u>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3. 제22조에 <u>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보칙 및 벌칙</p> <p>제29조 (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del>장</del>관은 이 법에 <u>따른</u>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u>따라서</u>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del>관</del>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del>법령</del> 또는 이에 <u>따른</u> 명령이나 유치원<del>규칙</del>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u>설립·경영자에게</u> 기간을 정하여 <u>시정 또는 변경을</u> 명할 수 있다.</p> <p>②<del>관</del>할청은 제1항에 <u>따른</u>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u>사람이</u> <u>정당한 사유없이</u> 지정된 기간 <u>안에</u> 이를 이행하지 <u>않으면</u> 대통령령에 <u>따라</u> 해당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1조 [<u>휴업 및 휴원(休園) 명령</u>] ①<del>관</del>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u>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면</u>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u>지체없이</u> 휴업을 하여야 한다.</p> <p>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원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p> <p>제32조 (유치원의 폐쇄)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li> <li>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u>3월 이상</u>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u>아니한</u> 경우</li> </ol>	<p>②<u>∨</u>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u>바로</u> 휴업을 하여야 한다.</p> <p>③<u>∨</u>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u>않거나</u>,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원처분(休園處分)을 할 수 있다.</p> <p>④<u>∨</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u>∨</u>중 원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u>∨</u>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p> <p>제32조 (유치원의 폐쇄) ①<u>∨</u>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u>∨</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면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li> <li>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u>3개월 이상</u>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u>않은</u> 경우</li> </ol>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의 <u>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u>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의 <u>규정에 따라</u>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u>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u>√</u>관할관청은 제8조<del>제2항</del>에 <u>따</u>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u>않고</u>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u>사람에게</u> 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제33조 (청문) 관할청은 제32조에 따 라 유치원 또는 시설의 폐쇄를 <u>명 하려면</u>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초·중등교육법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第1章 總 則</p>	<p>제1장 총 칙</p>
<p>第1條 (目的) 이 법은 教育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이 법은 教育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 (學校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初等學校·公民學校</li> <li>3. 中學校·高等公民學校</li> <li>4.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li> <li>5. 特殊學校</li> <li>6. 各種學校</li> </ol>	<p>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V호의 학교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초등학교·공민학교</li> <li>3. 중학교·고등공민학교</li> <li>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li> <li>5. 특수학교</li> <li>6. 각종학교</li> </ol>
<p>第3條 (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p>	<p>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V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p>
<p>第4條 (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 (학교의 설립V등) ①V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V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私立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教育監(이하 “教育監”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③私立學校를 設立·경영하는 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教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第 5 條 (學校의 竝設) 초등학교·中學校 및 高等學校는 地域의 實情에 따라 상호 竝設할 수 있다.</p> <p>第 6 條 (指導·監督) 國立學校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私立學校는 教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第 7 條 (獎學指導) 教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教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教育課程運營 및 教授·學習方法등에 대한 獎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p> <p>第 8 條 (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 公·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教育監을 말한다. 이하 “<u>管轄廳</u>”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u>學則</u>”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p>	<p>②√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u>사람</u>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u>사람</u>이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의 <u>중요사항</u>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5 조 (학교의 <u>병설</u>)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u>함께</u> 설립할 수 있다.</p> <p>제 6 조 (<u>관리·감독</u>)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u>관리·감독</u>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u>관리·감독</u>을 받는다.</p> <p>제 7 조 (<u>장학관리</u>)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은 <u>학교의</u>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u>장학관리</u>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 8 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u>경우</u>, <u>해당</u> 학교를 설립하려는 <u>사람</u>을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u>관리·감독</u>기관(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u>관할관청</u>”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u>학칙</u>”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9條 (평가)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度를 測定하기 위한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教育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教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教育行政機關과 學校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대상·기준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에 응하여야 한다.</p> <p>第10條 (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따른  수업료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립학교에 있어서는 教育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公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p>	<p>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은 國립학교는 教育인적자원부령, 公립과 사립학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第11條 (學校施設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學校教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國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施設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章 義務教育</p> <p>第12條 (義務教育) ①國家는 教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教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한다.</p> <p>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人접한 地方自治</p>	<p>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해서는 안된다.</p> <p>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國립학교는 학교의 장, 공립과 사립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서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의무교육</p> <p>제12조 (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의 취학에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의 취학이 곤란하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p>



현행 법령	순화안
<p>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거나, <u>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教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④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教育對象者를 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教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p> <p>第13條 (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 <u>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滿6歲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最初 學年初부터 滿12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進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u></p> <p>②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의 學生收容能力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滿5歲 아동의 就學을 허용할 수 있</p>	<p>하여 합동으로 初等學校·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設立·경영하거나, <u>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國립 또는 사립의  初等學校·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義務교육  V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④V國·공립학교의  設立·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서  義務교육V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設立·경영자는  義務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p> <p>제13조 (취학의무) ①V모든 國民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V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最初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에   따라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사람은   만V12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나이를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연수를   더한   나이를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p> <p>②V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만V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만V5세에  취학</p>

현행 법령	순화안
<p>다. 이 경우 滿5歲에 就學한 子女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者는 그 子女 또는 아동이 滿11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1歲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p> <p>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 말하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履行 및 督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제27조에 따라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사람은 만 11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나이를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연수를 더한 나이를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제2항에 따라서 만 14세를 말하고, 제27조에 따라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14條 (就學義務의 免除등) ①疾病 등 <u>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u> 就學이 불가능한 義務教育對象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를 免除하거나 猶豫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學年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學年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u>아니하고</u>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學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年령에 그 해당 年수를 더한다.</p>	<p>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질병∨등 <u>어쩔 수 없는 이유로</u>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는 大統領령에 따라서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學年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취학하는  사람의 學年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u>않고</u> 계속  취학했을 때의 學年과 차이가 <u>있으면</u>  제13조에 따른  年령에 그 해당 年수를 더한다.</p>
<p>第15條 (雇傭者의 義務) 義務教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u>그 雇傭으로 인하여</u>  당해 義務教育對象者가 義務教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u>고용으로 해당</u>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못한다.</p>
<p>第16條 (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教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u>사유로</u> 義務教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教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u>이유로</u>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p>

현행법령	순화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學生과 敎職員</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學生</p> <p>第17條 (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第18條 (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u>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 및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指導할 수 있다.</u> 다만, <u>義務敎育過程에 있는 學生을 退學시킬 수 없다.</u></p> <p>②學校의 長은 <u>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u> 적절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節 敎職員</p> <p>第19條 (敎職員의 구분) ①學校에 두는 敎員은 다음 各號와 같다.</p> <p>2.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둔다. 다만, 學生數 100名이하인 學校 또는 學級數 5學級이하인 學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學校에는 校監을 두지 <u>아니</u>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학생과 교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학생</p> <p>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u>∨敎育상 필요하면, 학교의 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을 징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u> 다만, 의무敎育과정의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p> <p>② <u>∨학생을 징계하려면,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u>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교직원</p> <p>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u>∨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국민학교·고등국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 <u>∨</u>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u>∨</u>이하인 학교 <u>∨</u>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u>∨</u>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u>않을</u> 수 있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3. 各種學校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準하여  필요한 敎員을  둔다.</p> <p>②學校에는 敎員외에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을  둔다.</p> <p>③學校에  두는 敎員과 職員(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定員·配置 基準등에  準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p> <p>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p> <p>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準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p> <p>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p> <p>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③敎師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p>	<p>3. 각종학교에는 (제1호와) 제2호에  準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p> <p>②학교에는  교원  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等  직원을  둔다.</p> <p>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 기준  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p> <p>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p> <p>①  学校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教育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準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둔다.</p> <p>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p> <p>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学校장은  교무를  管轄하고,   소속  敎職원을  管理·감독하며,   학생을  敎育한다.</p> <p>②  学校감은  学校장을  도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어쩔  수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敎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사가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学校사는  법령에  準하여   학생을  敎育한다.</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p> <p>第21條 (敎員의 資格) ①교장 및 교감은 別表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p> <p>②敎師는 正敎師(1級·2級)·準敎師·전문상담敎사(1급·2급)·사서敎사(1급·2급)·실기敎사·보건敎사(1급·2급) 및 영양敎사(1급·2급)로 나누되, 別表 2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의 檢定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소속하에 敎員資格檢定委員會를 둔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운영과 敎員의 資格檢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2條 (産學兼任敎師등) ①學校에 是 教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p>	<p>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命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p> <p>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도선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아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p> <p>④∨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하면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p>

현행 법령	순화안
<p>외에 産學兼任教師·名譽教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학생의 教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두는 産學兼任教師등의 종류·資格基準 및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章 學校</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通則</p> <p>第23條 (教育課程등) ①學校는 教育課程을 運營하여야 한다.</p> <p>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教育監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 教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學校의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4條 (授業등) ①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p> <p>②授業은 晝間·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夜間授業·季節授業·時間授業 또는 放送·通信에 의한 授業등을 할 수 있다.</p>	<p>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일반원칙</p> <p>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p> <p>②∨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을 통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③學校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운영 기타 授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적사항</li> <li>2. 학적사항</li> <li>3. 출결상황</li> <li>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li> <li>5. 교과학습발달상황</li> <li>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li> <li>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p>	<p>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에 관한 사항</li> <li>2. 학력에 관한 사항</li> <li>3. 출석과 결석√상황</li> <li>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li> <li>5. 교과학습√발달상황</li> <li>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li> <li>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한다.</p> <p>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진출하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옮긴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26條 (學年制) ①學生的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p> <p>第27條 (早期進級 및 早期卒業등) ①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 에 準하는 各種學校의 長은 才能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 第23條·第24條·第26條·第39條·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授業年限의  단축(수업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上級學校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경우에는 早期卒業한 것으로 본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才能이 우수한 者의  선정과 早期進級, 早期卒業 및 上級學校 早期入學資格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8條 (學習不振兒등에 대한 教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習不振 또는 性格障礙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學校生活을 하기 어려운 學生</p>	<p>제26조 (학년제) ① V 학생의 進級과  졸업은 學年制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管轄관청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 V 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p> <p>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V 등)</p> <p>① V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와 비슷한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허용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줄 수 있다.</p> <p>② V 제1항에 따라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하면, 조기졸업 V 한 것으로 본다.</p> <p>③ V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사람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주는 것 V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 (학습부진아 V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V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및 學業을 중단한 學生들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授業日數 및 敎育課程의 伸縮的 운영등 敎育상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29條 (敎科用圖書의 사용) ①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檢定 또는 인정한 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0條 (初·中·高等學校의 統合·운영) ①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효율적인 學校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의 實情에 따라 初等學校 및 中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 또는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의 施設·設備 및 敎員등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운영하는 學校의 施設·設備基準 및 敎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0條의2 (學校會計의 設置) ①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會計를 設置한다.</p>	<p>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大統領령에 따라서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자이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한다.</p> <p>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회계를 설치한다.</p>

현행법령	순화안
<p>②學校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教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li> <li>2. 第32條第7號의 學校運營支援費</li> <li>3. 第33條의 學校發展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li> <li>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납부금 및 學校運營支援費 외에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父母가 부담하는 經費</li> <li>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금 및 지원금</li> <li>6. 사용료 및 手數料</li> <li>7. 移越金</li> <li>8. 물품매각대금</li> <li>9. 기타 收入</li> </ol> <p>③學校會計는 學校運營 및 學校施設의 設置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經費를 歲出로 한다.</p> <p>④學校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당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한 金額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p> <p>⑤學校會計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②V학교회계는 다음 각V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V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li> <li>2. 제32조V제7호의 학교운영V지원비</li> <li>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에서의 전입금</li> <li>4. 제10조에 따른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 및 학교운영V지원비V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li> <li>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li> <li>6. 사용료 및 수수료</li> <li>7. 이월금</li> <li>8. 물품매각대금</li> <li>9. 그 밖의 수입</li> </ol> <p>③V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V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p> <p>④V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V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올릴 수 있다.</p> <p>⑤V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u>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30條의3 (學校會計의 운영) ①學校會計의 會計年度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末日에 종료한다.</p> <p>②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5日전까지 審議하여야 한다.</p> <p>④學校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이 경우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된 豫算은 當해年度의 豫算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職員등의 人件費</li> <li>2. 學校教育에 직접 사용되는 敎育費</li> <li>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li> <li>4. 法令上 支給義務가 있는 經費</li> <li>5. 이미 豫算으로  확정된 經費</li> </ol> <p>⑤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이다.</p> <p>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0일∨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일∨전까지 심의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직원∨등의 인건비</li> <li>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li> <li>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li> <li>4. 법령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li> <li>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li> </ol> <p>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안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⑥ <u>學校會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u>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u>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p>	<p>⑥ √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u>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② √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u>정보시스템 √ 운영센터</u>를 설치·운영하거나, <u>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면</u>,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u>정보시스템 √ 운영센터</u>의 설치·운영 등에 <u>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① √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p>

현행 법령	순화안
<p>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u>처리하여야 한다.</u></p> <p>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u>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u></p> <p>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u>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u>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u> 필요한 경우</li> <li>2. 제25조의 <u>규정에 의한</u>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u>이용하기 위하여</u> 제공하는 경우</li> <li>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u>목적</u>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li> </ol>	<p>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u>처리한다.</u></p> <p>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u>따른</u>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에 <u>따른</u>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u>처리한다.</u></p> <p>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에 <u>따른</u>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u>따른</u>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u>해당</u>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u>제공하지 못한다.</u>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에 <u>감독·감사의 권한</u>을 가진 행정기관이 <u>업무 처리에</u> 필요한 경우</li> <li>2. 제25조에 <u>따른</u>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u>제공하는</u> 경우</li> <li>3. 통계작성 <u>또는</u> 학술연구 등의 <u>목적</u>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li> </ol>

현행 법령	순화안
<p>4. <u>범죄의 수사</u>와 <u>공소의 제기</u>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p> <p>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u>필요한</u> 경우</p> <p>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p> <p>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0조의7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第2節 學校運營委員會</p> <p>第31條 (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 學校運營의 自律性を 높이고 地域</p>	<p>4. <u>범죄 수사</u>와 <u>공소 제기</u>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p> <p>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p> <p>6.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라서 제공하는 경우</p> <p>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한다.</p> <p>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등의 관리·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p> <p>제2절 학교운영위원회</p> <p>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p>

현행 법령	순화안
<p>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u>하기 위하여</u> 國·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u>學校運營委員會</u>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u>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u>로 구성한다.</p> <p>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u>5인 이상 15인</u>이내의 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31조의2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p> <p>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u>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u> 당연히 퇴직한다.</p> <p>第32條 (機能) ①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li> <li>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li> </ol>	<p>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u>해당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주민(대표)</u>으로 구성한다.</p> <p>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u>5명 √이상 15명√</u>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의2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p> <p>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면</u> 당연히 퇴직한다.</p> <p>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li> </ol>



현행 법령	순화안
<p>3. 學校教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p> <p>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5. 正規學習時間 종료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鍊活動에 관한 사항</p> <p>6. 敎育公務員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p> <p>7. 學校運營支援費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p> <p>9. 大學入學 特別銓衡중 學校長 추천에 관한 사항</p> <p>10. 學校運動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11.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p> <p>12. 기타 大統領令, 시·도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p> <p>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③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議·議決한다.</p>	<p>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p> <p>4.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5. 정규학습시간이 끝난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p> <p>6.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p> <p>7.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p> <p>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p> <p>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p> <p>12. 그 밖에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사립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第33條 (學校發展基金)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金의 造成 및 運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4條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p> <p>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p> <p>第 4 節 初等學校·公民學校</p> <p>第38條 (目的) 初等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第39條 (授業年限) 初等學校의 授業年限은 6年으로 한다.</p>	<p>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V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V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V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V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대통령령의 범위V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②V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 4 절 초등학교·공민학교</p> <p>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9조 (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p>

현행법령	순화안
<p>第40條 (公民學校) ①公民學校는 初等教育을 받지 못하고 <u>就學年齡을 초과한 者에 대하여 國民生活에  필요한 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u></p> <p>②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p> <p>③校舎·마을회관·工場 또는 事業場 기타 校舎로  사용가능한 建物은 公民學校의 校舎로  사용할 수 있다.</p> <p>第5節 中學校·高等公民學校</p> <p>第41條 (目的) 中學校는 初等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위에 <u>中等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u></p> <p>第42條 (授業年限) 中學校의 授業年限은 <u>3年으로 한다.</u></p> <p>第43條 (入學資格등) ①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u>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습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u></p> <p>②中學校의 入學方法과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44條 (高等公民學校) ①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課程의 教育을 받지 못하고 <u>就學年齡을 초과한 者</u> 또</p>	<p>제40조 (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u>취학나이를 지난 사람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教育을 目的으로 한다.</u></p> <p>②∨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p> <p>③∨<u>학교건물·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학교건물로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  학교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u></p> <p>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p> <p>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u>중등교육을 目的으로 한다.</u></p> <p>제42조 (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u>3년이다.</u></p> <p>제43조 (입학자격∨등)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u></p> <p>②∨중학교의 입학방법과 <u>절차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u>학교에 입학할  나이가</u></p>

현행 법령	순화안
<p>는 一般 成人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中等教育 및 職業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②高等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p> <p>③高等公民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 또는 公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第 6 節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p> <p>第45條 (目的)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기초위에 中等教育 및 기초적인 專門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第46條 (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時間制 및 通信制 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p> <p>第47條 (入學資格등) ①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②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48條 (學科등) ①高等學校에 學科를 둘 수 있다.</p>	<p>지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u>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u> 한다.</p> <p>②√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 이다.</p> <p>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u>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u>사람</u> 또는 <u>법령에서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u> 한다.</p> <p>제 6 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p> <p>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u>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목적으로</u> 한다.</p> <p>제46조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u>3년이다</u>.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다.</p> <p>제47조 (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u>사람은</u> 중학교를 졸업한 <u>사람</u> 또는 <u>법령에서 같은 등급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u> 한다.</p> <p>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 (학과√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高等學校의 敎科 및 敎育課程은 學生이 개인적 필요·適性 및 能力에 따라 進路를 選擇할 수 있도록 <u>정하여져야 한다.</u></p>	<p>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u>정한다.</u></p>
<p>第49條 (課程) ①高等學校에 <u>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全日制의 課程외에 時間制 또는 通信制의 課程을 둘 수 있다.</u></p> <p>②高等學校課程의 <u>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49조 (과정) ①∨고등학교에 <u>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u></p> <p>②∨고등학교과정의 <u>설치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0條 (分校) 高等學校의 設立·經營者는 <u>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u></p>	<p>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u>특별히 필요하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u></p>
<p>第51條 (放送通信高等學校) ①高等學校에 <u>放送通信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u></p> <p>②放送通信高等學校의 <u>設置·敎育方法·授業年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p> <p>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u>설치·敎育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2條 (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등) ①産業體에 근무하는 靑少年에 <u>대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産業體에 인접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夜間授業을 주로 하는 特別學級을 둘 수 있다.</u></p>	<p>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u>청소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敎育을 위하여 産業體에 가까운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u></p>

현행 법령	순화안
<p>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u>2학급</u>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u>당해</u>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③<u>2 이상</u>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u>2학급</u>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u>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u>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의 設立基準 및 入學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u>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靑少年을 僱傭하는 産業體의 經營者</u>는 시·도의 <u>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教育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u></p> <p>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u>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u></p>	<p>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u>두 개 학급</u>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u>해당</u>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③∨<u>둘 이상</u>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u>두개 학급</u>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u>예상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u>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u>필요한</u>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⑤∨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u>경영자</u>는 시·도의 <u>조례에 따라서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한다.</u></p> <p>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u>조례에 따라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u></p>

현행 법령	순화안
<p>在學하는 學生의 教育費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第53條 (就學義務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靑少年을 就學시켜야 한다.</p> <p>②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하는 때에는 당해 學生의 登校 및 授業에 支障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54條 (高等技術學校) ①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②高等技術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p> <p>③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 또는 高等公民學校(3年制)를 卒業한 者나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p> <p>④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教育을 하</p>	<p>생의 教育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제53조 (취학의무와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고용하는 靑少年이 제52조에 따른 特別學級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入學을 원하면 해당 靑少年을 취학시켜야 한다.</p> <p>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고용하는 靑少年이 제52조에 따른 特別學級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入學하는 경우, 해당 學生의 登校 및 수업에 支障을 주어서는 안된다.</p> <p>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교육을 목적으로 한다.</p> <p>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부터 3년까지이다.</p> <p>③고등기술학교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학교 또는 고등公民학교(3년제)를 졸업한 者 또는 법령에서  같은  등급∨이상의 學力을 인정받은 者로 한다.</p> <p>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者 또는 법령에서  같은  등급∨이상의 學力을 인정받은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교육을 위</p>

현 행 법 령	순 화 안
<p><u>기 위하여</u> 授業年限이 1년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p> <p>⑤工場 또는 事業場을 設置·경영하는 者는 高等技術學校를 設立·경영할 수 있다.</p> <p>第7節 特殊學校등</p> <p>第55條 (特殊學校) 特殊學校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礙등으로 인하여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 初등학교·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準하는 教育과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技能 및 社會適應 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p> <p>第56條 (專攻科의 設置) 高等學校課程을 設置한 特殊學校에 當해 課程의 卒業者(高等學校의 特殊學級 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專門技術 教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년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p> <p>第57條 (特殊學級)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特殊教育을 필요로 하는 學生을 위한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p> <p>第58條 (學力の 인정) 特殊學校 또는 特殊學級에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課程에 相應하는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는 그에 相應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p>	<p><u>하여</u> 수업연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p> <p>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u>사람은</u>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p> <p>제7절 특수학교∨등</p> <p>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6조 (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u>해당</u>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p> <p>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u>관할관청의</u>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p> <p>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u>어울리는</u> 교육과정을 마무리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학교를 졸업한 <u>사람과</u></p>



현행 법령	순화안
<p>한 學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第59條 (統合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가 초등학교·中學校 및 高等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에서 敎育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入學節次, 敎育課程등을 마련하는 등 統合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 8 節 各種學校</p> <p>第60條 (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p> <p>②各種學校는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③各種學校의 授業年限·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敎育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한</p>	<p>같은 등급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敎育을 받으면 별도의 입학절차, 敎育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 8 절 각종학교</p> <p>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는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학교와 비슷한 敎育기관을 말한다.</p> <p>② 각종학교는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의 학교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敎育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敎育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는 제</p>

현행 법령	순화안
<p><u>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u>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u>내지</u>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p>	<p>7조·제9조·제11조부터 제16조·제21조·제23조부터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부터 제34조를 <u>적용하지 않는다.</u></p> <p>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u>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b>부터</b>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b>부터</b> 제30조의7을 <u>적용하지 않는다.</u></p> <p>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p>

현행 법령	순화안
<p>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章 補則 및 罰則</p> <p>第61條 (學校 및 教育課程 운영의 特例) ①學校教育制度를 포함한 教育制度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第24條第1項·第26條第1項·第29條第1項·第31條·第39條·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限時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 教育課程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學校 또는 教育課程에 참여하는 教員 및 學生등은 이로 인하여 不利益을 받지 아니한다.</p> <p>第62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63條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管轄廳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學事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教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p>	<p>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보칙 및 벌칙</p> <p>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특히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제21조 √ 제1항·제24조 √ 제1항·제26조 √ 제1항·제29조 √ 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서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등은 이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p> <p>제6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 관할관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등의 사항에 교육 √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p>

현행 법령	순화안
<p>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管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指定된 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正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級·學科의   감축·廢止 또는  學生募集의  正지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p>정하여_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u>관할관청</u>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u>사람</u>이  正當한  理由∨없이  指定된  期間∨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大統령령에   따라서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正지하거나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正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第64條 (休業 및  休校命令) ①管轄廳은  災害등의   긴급한  事由로  正當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p> <p>③管轄廳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p> <p>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正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p>	<p>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u>관할관청</u>은 <u>재해</u>∨등의 <u>긴급</u>을 <u>원인</u>으로 <u>정상수업</u>이 <u>불가능하다</u>면 <u>학교의 장</u>에게 <u>휴업</u>을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u>학교의 장</u>은 <u>바로 휴업</u>한다.</p> <p>③∨<u>관할관청</u>은 <u>학교의 장</u>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u>휴업</u>을 <u>않거나</u> 특별히 <u>긴급한 원인</u>이 <u>있으면</u> <u>휴교처분</u>을 할 수 있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u>휴업된 학교</u>는 <u>휴업기간</u>∨중 <u>수업과 학생의 등교</u>가 <u>정지</u>되며, 제3항에 따라서 <u>휴교된 학교</u>는 <u>휴교기간</u>∨중 <u>단순한 관리업무</u>를 제외하고</p>

현행 법령	순화안
<p>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p> <p>第65條 (學校등의 閉鎖) ①管轄廳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을 위반한 경우</li> <li>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教育關係法  수에 의한 管轄廳의 命命을 數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li> <li>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  月上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②管轄廳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運營하는 者에 대하여 그가 設置·運營하는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p> <p>第66條 (聽聞) 管轄廳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p>	<p>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p> <p>제65조 (학교∨등의 폐쇄) ①∨관할  관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  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li> <li>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  가 이 법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li> <li>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li> </ol> <p>②∨관할관청은 제4조∨제2항에 따  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49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설  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제66조 (청문) 관할관청은 제65조에  따라서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한다.</p>

## 사립학교법

현행법률	순화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を 확보하고 公共性を 昂揚함으로써 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외의 法人 기타 私인이 設置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p> <p>②이 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p> <p>③이 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公共團體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 다) 또는 私인을 말한다.</p> <p>第3條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그 밖의 개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은 이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p> <p>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으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제3조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p>

현행법률	순화안
<p>수 없다. 다만, 初·中等教育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教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p> <p>3. 産業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技術大學</p> <p>4.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p> <p>第4條 (管轄廳)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教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p> <p>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p> <p>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1. 私立의 大學·産業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技術大學 및 이</p>	<p>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52조ⅴ제2항에 따라서 고용근로ⅴ청소년의 教育을 위하여 中학교 또는 高等학교를 設치·經營하는 産業체는 해당되지 않는다.</p> <p>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p> <p>3. 産業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p> <p>4. 대학·産業대학·전문대학 또는 技術대학에 準하는 各種학교</p> <p>제4조 (관할관청) ①ⅴ다음 각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p> <p>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학교</p> <p>2. 제1호에 規定한 사립학교를 設치·經營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ⅴ경영자</p> <p>③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教育인적자원부ⅴ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p> <p>1. 사립의 대학·産業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p>

현행법률	순화안
<p>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教育機關”이라 한다)</p> <p>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p> <p>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u>기타의</u>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學校法人</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通則</p> <p>第5條 (資産) ①學校法人은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과 <u>당해 學校의 經營에</u>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p> <p>②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과 財産에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6條 (事業) ①學校法人은 <u>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教育에</u>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u>그 收益을 私立 學校의 經營에</u>  充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③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u>지체없이</u>  다음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li> <li>2. 事業의 種類</li> <li>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li> </ol>	<p>들에 準하는 各種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p> <p>2. 제1호에 規정한 사립학교를  설치·經營하는 학교법인</p> <p>3. 제1호에 規정한 사립학교와 <u>다른</u>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經營하는 학교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학교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기본원칙</p> <p>제5조 (재산) ① 학교법인은 <u>설치·經營하는 사립학교에</u>  필요한  시설·설비와 經營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規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 (사업) ① 학교법인은 <u>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u> 안에서 <u>사립학교의 經營에</u>  充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③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u>바로</u> 다음  사항을  公告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li> <li>2. 사업의  종류</li> <li>3. 사업經營에  관한  자본금</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住所</p> <p>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p> <p>6. 기타 필요한 事項</p> <p>④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p> <p>第7條 (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p> <p>第8條 (設立의 登記) ①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目的</li> <li>2. 名稱</li> <li>3. 事務所</li> <li>4. 設立許可의 年月日</li> <li>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li> <li>6. 資産의 總額</li> <li>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li> <li>8. 理事의 姓名·住所</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p> <p>③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p>	<p>4. 事業경영 代表者의 姓名·주소</p> <p>5. 事業의 시기 및 그 기간</p> <p>6.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영관리를 한다.</p> <p>제7조 (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p> <p>제8조 (설립등기) ①√학교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일√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li> <li>4. 설립허가의 연월일</li> <li>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li> <li>6. 재산의 총액</li> <li>7. 재산기부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li> <li>8. 이사의 姓名·주소</li> </ol> <p>②√제1항에 따라서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바로 공고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제 8 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u>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 8 조의2 (재산기부결과의 보고) 제 8조에 <u>따라서</u> 등기한 학교법인은 <u>바로 재산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서 관할관청에 재산기부결과를 보고한다.</u></p>
<p>第 9 條 (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民法 第34條 및 第 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제 9 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第 2 節 設 立</p>	<p>제 2 절 설 립</p>
<p>第10條 (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教育人的 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미리 産業體가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p>	<p>제10조 (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재산을 기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目的</li> <li>2. 名稱</li> <li>3. 設置·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li> <li>4. 事務所의 所在地</li> <li>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설치·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li> <li>4. 사무소의 소재지</li> <li>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p> <p>7. 理事會에 관한 事項</p> <p>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p> <p>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p> <p>10. 解散에 관한 事項</p> <p>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p> <p>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p> <p>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定하여야 한다.</p> <p>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p> <p>④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教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p>	<p>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p> <p>7. 이사회에 관한 사항</p> <p>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p> <p>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10. 해산에 관한 사항</p> <p>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p> <p>12.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에 적도록 한 사항</p> <p>②∨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③∨(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남은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중에서 선정되도록 한다.</p> <p>제10조의2 (재산기부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기부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p>

현행법률	순화안
<p>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p> <p>1. <u>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u>                  2. <u>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u>                  3. <u>출연자의 출연의사</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p> <p>第11條 (定款의 補充)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項중 그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定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職權으로 第1項의 事項을 定할 수 있다.</p> <p>第12條 (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p> <p>第13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47條·第48條·第50條 내지 第54條 및</p>	<p>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p> <p>1. <u>재산기부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u>                  2. <u>기부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u>                  3. <u>재산기부자의 기부의 뜻</u>                  ②V제1항에 따른 재산기부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V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p> <p>제11조 (정관의 보충) ①V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V제1항 각V호에 규정한 사항V중 목적과 재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V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그V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으면 교육인적자원부V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제12조 (설립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p> <p>제13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부터 제54조와 제</p>

현행법률	순화안
<p>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 準用한다.</p> <p>第3節 機關</p> <p>第14條 (任員) ①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 이상의 理事와 2人 이상의 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幼稚園만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5人 이상의 理事와 1人 이상의 監事를 둘 수 있다.</p> <p>②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p> <p>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회(이하 “대학평의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p>	<p>55조ⅴ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도 적용한다.</p> <p>제3절 기관</p> <p>제14조 (임원) ①ⅴ학교법인은 (임원으로서) 일곱ⅴ명 이상의 이사와 두ⅴ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임원으로서) 다섯ⅴ명 이상의 이사와 한ⅴ명 이상의 감사만을 둘 수 있다.</p> <p>②ⅴ이사ⅴ중 한ⅴ명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된다.</p> <p>③ⅴ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ⅴ개방이사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회(이하 “대학평의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p>

현행법률	순화안
<p>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p> <p>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p> <p>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u>규정에 따른</u>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p> <p>第15條 (理事會) ①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③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p> <p>第16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p> <p>1. 學校法人의 豫算·決算·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p>	<p>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u>해당</u>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p> <p>⑤<del>제3항</del>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p> <p>⑥<del>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del>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u>대통령령에 따라</u>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5조 (이사회) ①<del>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del>                  ②<del>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del>                  ③<del>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del>                  ④<del>감사는 이사회에出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del></p> <p>제16조 (이사회 의 기능) ①<del>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del></p> <p>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p>

현행법률	순화안
<p>3. 學校法人의 合併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p> <p>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p> <p>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p> <p>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p> <p>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p> <p>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p> <p>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校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 理事는 當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p> <p>第17條 (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p> <p>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p> <p>1. 在籍理事 半數 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p> <p>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p> <p>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p> <p>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p> <p>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p> <p>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p> <p>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서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V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제17조 (이사회 의 소집) ①V이사장은 <u>필요하면</u>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이사장은 다음 각V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으면, <u>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안에</u>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재적이사 절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p> <p>2. 제19조V제4항V제4호에 따라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p> <p>③V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u>알려야 한다</u>.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거나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동으로 이를 召集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u>관할청의  승인</u>을  얻어야  한다.</p> <p>第18條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u></li> <li>2.  안전</li> <li>3.  의사</li> <li>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li> <li>5.  표결수</li> <li>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ⅴ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의  소집이  불가능하다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u>관할관청의  승인</u>을  얻어야  한다.</p> <p>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  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u>열리고</u>,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ⅴ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회의 시작·중지와 마칩의 날짜와 시간</u></li> <li>2.  안전</li> <li>3.  회의일정</li> <li>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li> <li>5.  표결수</li> <li>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현 행 법 률	순 화 안
<p>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u>그 성명을</u>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u>간(間)서명</u>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u>3인을 호선하여</u>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u>간(間)서명</u> 또는 <u>간(間)인하게</u>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u>조속한 시일 내에</u> 회의록을 <u>작성</u>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u>관할청에</u> 제출할 수 있다.</p> <p>④회의록은 <u>공개</u>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u>공개하지</u> 아니할 수 있다.</p> <p>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19條 (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를 行하며 <u>기타</u> 學校法人 内部의 事務를 <u>統轄</u>한다.</p> <p>②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p>	<p>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u>이름을</u>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u>걸쳐서</u> 서명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u>세∨명을 선택하여</u>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u>걸쳐서</u>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단서에 따라서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u>빠른 날짜</u> 안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회의록에 <u>갈음</u>하여 회의조서를 <u>관할관청</u>에 제출할 수 있다.</p> <p>④∨회의록은 <u>공개</u>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u>사항은</u> 이사회 의결로 <u>비공개</u>로 할 수 있다.</p> <p>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u>그</u> <u>밖에</u>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u>총괄(모두 관할)</u>한다.</p> <p>②∨이사장이 <u>결위</u>되거나 <u>사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u>정관</u>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p>

현행법률	순화안
<p>定款에 規定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互選에 의하여 다른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p> <p>③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學校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p> <p>④監事は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를 監査하는 일</li> <li>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li> <li>3.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한 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理事會와 管轄廳에 보고하는 일</li> <li>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li> <li>5. 學校法人의 財産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li> </ol> <p>第20條 (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p> <p>②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이 경우 教育인적자원부장</p>	<p>사회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V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li> <li>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li> <li>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li> <li>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li> <li>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 진술하는 일</li> </ol> <p>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V 임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②V임원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교육인적자원부V장</p>

현행법률	순화안
<p>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u>공개하여야 한다</u>.</p> <p>③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u>초과할 수 없고</u>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u>초과할 수 없고</u>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第20條의2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p> <p>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u>의한</u> 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한</u> 때</p> <p>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不當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u>장애를 야기한</u> 때</p> <p>3. 學事行政에 관하여 <u>당해</u>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p> <p>6. 管轄廳의 學校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일이 <u>경과하여도</u> 이에 <u>응하지 아니한</u> 경우에 限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p>	<p>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u>공개한다</u>.</p> <p>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u>넘을 수 없지만</u>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u>넘을 수 없고</u>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u>관할관청은</u>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u>따른</u> 명령을 이행하지 <u>않은</u> 때</p> <p>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u>부당√등으로</u>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u>어려움이 발생한</u> 때</p> <p>3. 학사행정에 관하여 <u>해당</u>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p> <p>6. 管轄廳의 學校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p> <p>②√제1항에 <u>따른</u> 취임승인의 취소는 <u>관할관청이</u> 해당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u>지나도록 응하지 않은</u>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p>

현행법률	순화안
<p>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p> <p>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찰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第21條 (任員選任의 制限) ①理事定數의 半數 이상은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다만, 大學敎育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의</p>	<p>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del>관찰</del>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del>임원</del>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u>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u>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제20조의2<del>제1항</del>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p> <p>2. 제20조의2<del>제2항</del>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del>중</del> 해당<del>임원</del>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에 <u>중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u></p> <p>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u>이유가 끝나면</u>, 관찰관청은 이를 즉시 해제한다.</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del>이</del>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del>국민</del>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del>중</del>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u>외국인이</u>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p>

현행법률	순화안
<p>基本財産額の 2分の 1 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u>出捐한</u>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の 2 미만을 <u>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u>로 할 수 있다.</p> <p>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理事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 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p> <p>④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p> <p>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u>자</u>를 선임한다.</p> <p>⑥大統領령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p> <p>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1. 제20조의2의 規定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u>경과한 자</u></p>	<p>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u>기부한</u>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u>외국인</u>으로 할 수 있다.</p> <p>②V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u>사람</u>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p> <p>③V이사V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敎育경험이 3년 이상 있는 <u>사람</u>이어야 한다.</p> <p>④V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u>사람</u>이 아니어야 한다.</p> <p>⑤V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u>사람</u>을 선임한다.</p> <p>⑥V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V중 <u>한 명</u>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u>사람</u>이어야 한다.</p> <p>⑦V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을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u>지난 사람</u></p>

현행법률	순화안
<p>2. 제61조의 <u>규정에 따라</u>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p> <p>3. 제54조의2의 <u>규정에 따라</u>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u>경과한</u> 자</p> <p>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u>규정에</u> 해당하는 자</p> <p>2. 제20조의2의 <u>규정에 의하여</u>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u>자로서</u> 5년이 <u>경과하지 아니한</u> 자</p> <p>3. 第54條의2의 <u>規定에 의한</u> 解任要求에 <u>의하여</u> 解任된 <u>者로서</u> 3년이 <u>경과하지 아니한</u> 者</p> <p>4. 제61조의 <u>규정에 따라</u> 파면된 <u>자로서</u> 5년이 <u>경과하지 아니한</u> 자</p> <p>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u>경과하지 아니한</u> 자</p> <p>第23條 (任員の 兼職禁止) ①이사장은 <u>당해</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u>당해</u>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p> <p>②理事는 監事 또는 <u>당해</u>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p>	<p>2. 제61조에 <u>따라</u> 파면된 날부터 5년이 <u>지난</u> 사람</p> <p>3. 제54조의2에 <u>따라</u>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u>지난</u> 사람</p> <p>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V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사람</u>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u>해당하는</u> 사람</p> <p>2. 제20조의2에 <u>따라서</u>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u>사람으로서</u>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3. 제54조의2에 <u>따른</u> 해임요구에 <u>따라서</u> 해임된 <u>사람으로서</u>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4. 제61조에 <u>따라</u> 파면된 <u>사람으로서</u> 5년이 <u>지나지 않은</u> 사람</p> <p>5. 4급 이상의 교육행정V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u>지나지 않은</u> 사람</p> <p>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V이사장은 <u>해당</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u>해당</u>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p> <p>②V이사는 감사 또는 <u>해당</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p>

현행법률	순화안
<p>敎員 기타 職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學校의 長은 예외로 한다.</p> <p>③監事는 理事長·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p> <p>第24條 (任員의 補充)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li> <li>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li> <li>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u>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u></li> </ol>	<p>의 교원 <u>그 밖에</u>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p> <p>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u>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u>)을 겸할 수 없다.</p> <p>제24조 (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u>중</u>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보충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2 (사학분쟁 <u>∨</u>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u>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u>∨</u>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 <u>∨</u>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u>∨</u>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li> <li>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li> <li>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u>관할관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u></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u>지체 없이</u> 관할청에 <u>통보하여야 한다</u>.</p> <p>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u>따라야 한다</u>. 다만, 심의결과에 <u>이의가 있는 경우에는</u>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p> <p>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u>호선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이 추천하는 <u>자 3인</u></li> <li>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u>자 3인</u></li> <li>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u>자 5인</u></li> </ol> <p>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u>자</u></li> <li>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u>자</u>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u>자</u></li> </ol>	<p>③<u>√</u>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u>바로</u> 관할청에 <u>알린다</u>.</p> <p>④<u>√</u>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u>따른다</u>. 다만, 심의결과에 <u>이의가 있으면</u>,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p> <p>①<u>√</u>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u>선택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이 추천하는 <u>사람 3명</u></li> <li>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u>사람 3명</u></li> <li>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u>사람 5명</u></li> </ol> <p>②<u>√</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③<u>√</u>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의4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u>√</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u>사람</u></li> <li>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u>사람</u>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u>사람</u></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u>자로서</u>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u>자</u></p> <p>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u>자</u></p> <p>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u>자로서</u>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u>자</u></p> <p>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第25條 (臨時理事의 選任) ①<u>관할청</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는 경우에는</u>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u>선임하여야 한다.</u></p> <p>1. <u>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u></p> <p>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u>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u>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p> <p>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p> <p>②臨時理事는 <u>조속한 시일내에</u>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u>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u>사람으로서</u>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u>사람</u></p> <p>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u>사람</u></p> <p>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u>사람으로서</u>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u>사람</u></p> <p>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①√<u>관할</u>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면</u>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u>선임한다.</u></p> <p>1. <u>이사의 결원보충을 없으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u></p> <p>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u>넘는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u></p> <p>3. <u>제25조의2에 따라서</u>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p> <p>②√임시이사는 <u>빠른 시간√안에</u> 제1항에 따른 이유가 <u>없어지도록 노력한다.</u></p>

현행법률	순화안
<p>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任될 수 없다.</p> <p>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li> <li>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li> <li>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li> </ol> <p>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p>	<p>③√임시이사는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재임하며,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p> <p>④√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p> <p>⑤√관할관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li> <li>2. 임시이사가 직무를 명백히 게을리 한 때</li> <li>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li> </ol> <p>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관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이유가 없</p>

현행법률	순화안
<p><u>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u>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u>보고하여야 한다.</u></p> <p>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u>관할청에 통보한다.</u></p> <p>第26條 (任員의 報酬制限) ①學校法人의 任員중 定款에서 정한 常勤하는 任員을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p> <p>②學校法人은 그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3分の 1 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당해 法人의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醫療費·葬禮費를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第2項의 財産을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의 基準과 生計費·醫療費·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어지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u>선임한다.</u></p> <p>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u>보고한다.</u></p> <p>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u>관할관청에 알린다.</u></p> <p>제26조 (임원의 보수제한) ①√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②√학교법인은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기부 또는 증여한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p> <p>③√제2항의 재산을 기부 또는 증여한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제26조의2 (대학평의위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게 하기</u>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p>	<p>제26조의2 (대학평의위원회) ①<u>∨</u>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추천위원회 <u>위원추천에</u>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u>중</u>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u>∨</u>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p>
<p>第27條 (民法의 準用) 民法 第59條 第2項 · 第61條 · 第62條 · 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p> <p>第4節 財産과 會計</p>	<p>제27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 ∨ 제2항 · 제61조 · 제62조 · 제64조 및 제65조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 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p> <p>제4절 재산과 회계</p>
<p>第28條 (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 · 贈</p>	<p>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u>∨</u>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 증</p>

현행법률	순화안
<p><u>與·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拋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u></p> <p>②學校教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p> <p>③初·中等教育法 第10條 및 高等教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納付金(入學金·學校運營支援費 또는 期成會費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 이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別도 計座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預金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p> <p>第29條 (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區分할 수 있으며, 각 會計의 歲入·歲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授業料</p>	<p>여·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p> <p>③√『초·중등교육법』 제10조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서 別도 計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p> <p>제29조 (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그 밖의 납</p>

현행법률	순화안
<p><u>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規定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u>당해</u>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u>거친</u>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p> <p>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u>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u>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30條 (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u>그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年度에 따른다.</u></p> <p>第31條 (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學校法人은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보고하고 公시하여야 한다.</u></p> <p>②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부당하게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u>그 是正을 指導할 수 있다.</u></p>	<p>부금은 교비회계의 <u>수입으로</u>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p> <p>③V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p> <p>④V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u>해당</u>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u>받은</u>V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p> <p>⑥V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u>옮기거나 빌려 줄 수 없다.</u>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p> <p>제30조 (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u>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업연도에 따른다.</u></p> <p>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V 학교법인은 <u>대통령령에 따라서</u> 매 회계년도 <u>시작</u>V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u>끝난</u>V후에는 결산을 <u>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u></p> <p>②V관할관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면 <u>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현행법률	순화안
<p>③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 부터 獨立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32條 (財産目錄등의 備置) ①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 이내에 每 會計年度末 현재의 財産目錄·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作成하여 이를 恒時 그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그 書式은 教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p> <p>第33條 (會計規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p>	<p>③√학교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끝난√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p> <p>④관할관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하고 확인도장을 찍은 감사보고서를 붙이도록 하며, 학교법인에게서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붙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 (재산목록√등의 갖추)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년도 끝난 후 2개월 안에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항상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갖추어 둘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 (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의 예산 또는 회계</p>

현행법률	순화안
<p>하여 필요한 事項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다.</p> <p>第5節 解散과 合併</p> <p>第34條 (解散事由) ①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li> <li>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li> <li>3. 다른 學校法人과 合併한 때</li> <li>4. 破産한 때</li> <li>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解散命令이 있을 때</li> </ol> <p>②第1項第2號의 事由에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第35條 (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併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教育人的資源部長官에 대한 清算終結의 申告가 있을 때에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중 大學教育機關을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第4條第1項第1號에 規定한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p>	<p>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p> <p>제5절 해산과 합병</p> <p>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이유로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에 정한 해산이유가 발생한 때</li> <li>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li> <li>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li> <li>4. 파산한 때</li> <li>5. 제47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li> </ol> <p>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산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5조 (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산종결 신고가 있으면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서 처분되지 않은 재산 중 대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을 私立學校教育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學校法人에 대하여 讓與·無償貸付 또는 補助金으로 支給하거나 기타 教育事業에 사용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당해 市·道教育監이 管理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財政經濟部長官의, 市·道教育監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第35條의2 (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①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 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教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教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教育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p>	<p>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p> <p>④∨제2항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시·도∨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35조의2 (해산과 남은 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남은 재산∨처분계획서를 붙여서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처분계획은 이사</p>

현행법률	순화안
<p>計畵은 理事定數의 3分の 2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p> <p>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道教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p> <p>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⑦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0條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法律</p>	<p>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학교법인이 <u>보유하는</u>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u>안</u>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p> <p>2.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학교법인이 <u>보유하는</u>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p> <p>⑤√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u>남은</u> 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아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⑥√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서 해산한 학교법인은 <u>남은</u>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u>남은</u> 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u>사람</u>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p>

현행법률	순화안
<p>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u>出捐</u>할 수 있다.</p> <p>第36條 (合併節次) ①學校法人이 다른 學校法人과 <u>合併하고자 할 때에는</u> 理事定數의 3分の 2 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併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認可申請書에 合併後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p> <p>第37條 (同前) ①學校法人은 第36條 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u>이내에</u>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p> <p>②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 <u>提議할 것을</u>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2月 이상이어야 한다.</p> <p>第38條 (同前) ①債權者가 第37條 第2項의 期間내에 合併에 대하여 異</p>	<p>에 따른 公익법인의  설립재산으로 <u>기부</u>할 수 있다.</p> <p>제36조 (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p> <p>제37조 (앞 조와 같음) ①∨학교법인이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인가의 <u>알림</u>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u>안에</u>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p>②∨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안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안에 <u>이의</u>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u>개별적으로</u>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제38조 (앞 조와 같음)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안에</p>

현행법률	순화안
<p>議를 <u>提議하지 아니한 때에는</u> 合併으로 인하여 存續 또는 設立된 學校法人의 債務引受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p> <p>②債權자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u>提議한 때에는</u> 學校法人은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p> <p>第39條 (同前) 合併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立에 관한 事務는 各 學校法人이 選任한 者가 共同으로 行하여야 한다.</p> <p>第40條 (合併의 效果) 合併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은 合併에 의하여 消滅된 學校法人의 權利·義務(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義務를 포함한 다)를 承繼한다.</p> <p>第41條 (合併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併은 合併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p> <p>第42條 (民法등의 準用) ①民法 第79條, 第81條 내지 第95條의 規定</p>	<p>합병에 <u>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u> 합병으로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안에 <u>이의를 제기하면</u>, 학교법인은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9조 (앞 조와 같음) 합병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등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사람이 공동으로 행한다.</p> <p>제40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해당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 그 밖의 처분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p> <p>제41조 (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u>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u>.</p> <p>제42조 (민법√등의 준용) ①√민법 제79조, 제81조부터 제95조는 학</p>

현행법률	순화안
<p><u>은 學校法人의 解散과 清算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u></p> <p>②이 法 第18條와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清算人에 이를 準用한다.</p> <p>第6節 지원과 監督</p> <p>第43條 (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教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私立學校教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を 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u></li> <li>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u>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u></li> </ol>	<p>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도 적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ⅴ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p> <p>②ⅴ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ⅴ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는 학교법인의 청산인에도 적용한다.</p> <p>제6절 지원과 감독</p> <p>제43조 (지원) ①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교육진흥에 필요하면 사립학교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ⅴ지원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ⅴ관할관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ⅴ제3항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ⅴ지원단체에게 다음 각ⅴ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원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ⅴ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u></li> <li>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ⅴ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u>부적당하다면 예산에 필요</u></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u>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u></p> <p>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p> <p>第44條 (實業教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p> <p>第45條 (定款變更) 學校法人의 定款의 變更은 理事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 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p>	<p>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p> <p>③∨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원성도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면,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p> <p>제45조 (정관변경)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알린다.</p>

현행법률	순화안
<p>第46條 (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p> <p>1. 當해 學校法人이 當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 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p> <p>2. 當해 事業을  계속함이 當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教育에 支障이 있을 때</p>	<p>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관청은 제6조 Ⅴ 제1항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으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해당 학교법인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p> <p>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방해를 줄 때</p>
<p>第47條 (解散命令)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p> <p>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p> <p>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p>	<p>제47조 (해산명령) ① Ⅴ 교육인적자원부 Ⅴ 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으면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p> <p>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p> <p>2. 목적_달성이 불가능한 때</p> <p>② Ⅴ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관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할 수 있다.</p>
<p>第47條의2 (청문)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p>	<p>제47조의2 (청문) 교육인적자원부 Ⅴ 장관은 제47조에 따라서 학교법인</p>

현행법률	순화안
<p>校法人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第48條 (보고徴收등) 管轄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帳簿·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제48조 (보고징수등) 관할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第3章 私立學校經營者</p>	<p>제3장 사립학교경영자</p>
<p>第50條 (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① 私立學校經營者중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織을 變更하여 學校法人이 될 수 있다.</p>	<p>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p>
<p>第51條 (準用規定) 第5條·第28條第2項·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43條·第44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 第33條의 準用에 있어서는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관한 部分에 限한다.</p>	<p>제51조 (준용규정) 제5조·제28조 제2항·제29조·제31조부터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33조의 준용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만 적용한다.</p>
<p>第4章 私立學校敎員</p>	<p>제4장 사립학교교원</p>
<p>第1節 資格·任免·服務</p>	<p>제1절 자격·임면·복무</p>
<p>第52條 (資格) 私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p>	<p>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현행법률	순화안
<p>第53條 (學校의 長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教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분의 2 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p> <p>③各급학교의 長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長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第53條의2 (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되,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學校法人 및 법인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li> <li>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li> </ol>	<p>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①∨各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려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各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며, 4년을 넘을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만 중임할 수 있다.</p> <p>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各급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_교원의 임면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li> <li>2.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에 따라서 행한다.</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②大學教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委任할 수 있다.</p> <p>③大學教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 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하여는 國·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規定을 準用한다.</p> <p>④제3항의 規定에 依하여 僱用된 敎員의 僱用權자는 당해 敎員의 僱用기간이 滿료되는 때에는 僱用기간 滿료일 4월전까지 僱用기간이 滿료된다는 사실과 재僱용 심의를 申請할 수 있음을 당해 敎員에게 通知(문서에 의한 通知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를 받은 敎員이 재僱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僱용 심의를 僱用權자에게 申請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재僱용 심의를 申請받은 僱用權자는 제53조의3의 規定에 의한 敎員人事위원회 的 재僱용 심의를 거쳐 당해 敎員에 대한 재僱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僱用기간 滿료일 2</p>	<p>②√大學敎育기관 的 敎員의 僱用權은 해당 학교법인의 正관에 따라서 학교의 장에게 僱用할 수 있다.</p> <p>③√大學敎育기관 的 敎員은 正관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僱用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은 國·공립大學 的 敎員에게 적용되는 相關規定에 따른다.</p> <p>④제3항에 따라서 僱用된 敎員의 僱用權자는 해당 敎員의 僱用기간이 滿료되는 때에는 僱用기간 滿료일 4개월√전까지 僱用기간이 滿료된다는 사실과 재僱용 심의를 申請할 수 있음을 해당 敎員에게 告知(문서를 통한 告知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다.</p> <p>⑤√제4항에 따라서 告知를 받은 敎員이 재僱용을 받으려면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재僱용 심의를 僱用權자에게 申請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른 재僱용 심의를 申請√받은 僱用權자는 제53조의3에 따른 敎員人事위원회 的 재僱용 심의를 거쳐 해당 敎員의 재僱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僱用기간 滿료일 2개월√전까지 해당</p>

현행법률	순화안
<p>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u>아니하겠다는 의사</u>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li> </ol> <p>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p>	<p>교원에게 <u>알려야 한다</u>. 다만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u>않겠다는 의사</u>와 재임용 거부이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p> <p>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서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이고 학칙이 정하는 이유에 근거한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li> </ol> <p>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del>에 필요</del></p>

현행법률	순화안
<p>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53條의3 (敎員人事委員會) ①各級學校(初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p> <p>②敎員人事委員會의 組織·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p> <p>第53條의4 (國·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に 관하여는 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4項·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第54條 (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 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 이내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p>	<p>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p> <p>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3조의4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p> <p>제54조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u>끝날</u>으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u>날로부터 7일 안에</u> 관할관청에 <u>보고</u>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p> <p>第54條의2 (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要求받은  任命權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li> <li>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授業 및 卒業에  關한  當해 學校의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으로서  教育關係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li> <li>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教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li> <li>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關하여  不正 또는  顯著히  부당한  일을  行하였을  때</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의  要求는  管轄廳이  當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에게  그  事由를   밝혀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p>	<p>③√관할관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54조의2 (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은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li> <li>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수업 및 졸업에  關한  當해  학교의  장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教育√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위반할  때</li> <li>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教育√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li> <li>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부정 또는  명백하게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li> </ol> <p>②√제1항에  따른  해임의  要求는  管轄廳이  當해  學校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유를  밝혀  시정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限해서  行할  수  있다.</p>

현행법률	순화안
<p>第54條의3 (任命의 제한) ①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u>者는</u>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li> <li>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li> <li>3. 제61조의 規定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li> <li>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li> </ol> <p>②제1항제1호 <u>내지</u> 제3호에 해당하는 <u>자로서</u>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u>경과한 자가</u>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u>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u></p> <p>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u>자</u>는 <u>당해</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u>3분의 2</u> 이상의 찬성과 <u>관할청의</u> 승인을 받은 <u>자</u>는 <u>그러하지</u>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li> <li>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li> </ol> <p>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u>자</u>는 <u>교원</u>으로 임명될 수 없다.</p>	<p>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u>各∨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u>사람</u>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의2에 <u>따라서</u>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u>지나지 않은</u> <u>사람</u></li> <li>2. 제54조의2에 <u>따른</u> 해임요구로 해임되고 3년이 <u>지나지 않은</u> <u>사람</u></li> <li>3. 제61조에 <u>따라</u> 파면되고 5년이 <u>지나지 않은</u> <u>사람</u></li> <li>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li> </ol> <p>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서</u> 임명의 제한 기간이 <u>지난 사람이</u>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u>재적이사 3분의 2</u>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p> <p>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u>사람</u>은 <u>해당</u>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 <u>3분의 2</u> 이상의 찬성과 <u>관할관청의</u> 승인을 받은 <u>사람</u>은 임명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li> <li>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li> </ol> <p>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u>사람</u>은 <u>교원</u>으로 임명될 수 없다.</p>

현행법률	순화안
<p>第54條의4 (期間制敎員) ①各級學校敎員의 任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敎員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하는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任免權者는 學校法人의 定款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學校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敎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li> <li>2. 敎員이 派遣·研修·停職·職位解除 또는 休暇등으로 1月 이상 職務에 종사할 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li> <li>3.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敎員이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하여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하게 된 때</li> <li>4. 特定敎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敎員이 필요한 때</li> </ol> <p>②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56條, 第58條第2項, 第58條의2, 第59條, 第61條 내지 第64條, 第64條의2, 第65條, 第66條 및 第66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만료되면 당연히 退職된다.</p>	<p>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①▽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에 따라서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li> <li>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li> <li>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li> <li>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li> </ol> <p>②▽기간제▽교원은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③期間制敎員의 任用期間은 1年 <u>이내</u>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の 범위 내에서 <u>그 기간</u>을 연장할 수 있다.</p> <p>第55條 (服務) 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2節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p> <p>第56條 (意思에 反한 休職·免職등의 금지) ①私立學校 敎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學級·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私立學校 敎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p> <p>第57條 (當然退職의 事由) 私立學校의 敎員이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 退職된다.</p> <p>第58條 (免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當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p>	<p>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u>안으로</u> 하고, 필요하면 3년의 범위∨안에서 <u>기간</u>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5조 (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p> <p>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학급·학과의 <u>개편</u> 또는 <u>폐지</u>로 그 직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사립학교 교원은 <u>권고</u>로 사직당하지 않는다.</p> <p>제57조 (당연퇴직의 이유) 사립학교의 교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u>각∨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되면, 당연 퇴직된다.</p> <p>제58조 (면직의 이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u>면직</u>시킬 수 있다.</p>



현행법률	순화안
<p>1.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 碍로 1年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p> <p>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p> <p>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幫助한 때</p> <p>4. 정치운동을 하거나 集團의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煽動한 때</p> <p>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記載를 하거나 虛僞의 證明이나 陳述을 한 때</p> <p>②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第58條의2 (職位의 解除)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敎員으로서 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p> <p>2.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p> <p>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p> <p>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p> <p>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p> <p>5. 인사기록에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p> <p>②V제1항V제2호부터 제5호의 이유에 따라서 면직시키려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V사립 학교 교원이 다음 각V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p> <p>2. 징계의결이 요구V중인 사람</p> <p>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任免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p> <p>③任免權者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u>3월 이내</u>의 기간待機를 命한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免權者는 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研修 또는 특별한 研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⑤私立學校 敎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면권자는 바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u>3개월 안의</u> 기간대기를 명한다.</p> <p>④∨제3항에 따라서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第59條 (休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命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身體·精神上의 障蔽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li> <li>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li> </ol>	<p>제59조 (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이유로 휴직을  원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li> <li>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p> <p>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p> <p>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 이상 研究 또는 研修하게 된 때</p> <p>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教育機關에 雇傭된 때</p> <p>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敎員이 妊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p> <p>8.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國內의 研究機關이나 教育機關 등에서 研修하게 된 때</p> <p>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p> <p>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p> <p>11. 敎員의 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 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p> <p>12.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p>	<p>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p> <p>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p> <p>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p> <p>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p> <p>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p> <p>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p> <p>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p> <p>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p> <p>12.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이유가 있는 때</p>

현행법률	순화안
<p>②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는 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p> <p>③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p> <p>第60條 (敎員의 不逮捕特權)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的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p> <p>제60조의2 (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u>폐질·퇴직·사망</u>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li> <li>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u>질병으로 인하여 사망</u>하거나 퇴직한 경</li> </ol>	<p>②Ⅴ제1항의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Ⅴ등은 정관(사립학교Ⅴ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p> <p>③Ⅴ임면권자는 제1항Ⅴ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p> <p>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Ⅴ학교장의 동의Ⅴ없이 학원Ⅴ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p> <p>제60조의2 (사회보장) ①Ⅴ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u>치료불능질병·퇴직·사망</u>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p> <p>②Ⅴ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li> <li>2. 직무에 따른 부상 또는 <u>질병으로 사망</u>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li> </ol>

현행법률	순화안
<p>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p> <p>3. <u>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u></p> <p>4. <u>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u></p> <p>第60條의3 (名譽退職) ①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 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자진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p> <p>第3節 懲戒</p> <p>第61條 (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懲戒議決의 結果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p> <p>1. 이 法과 기타 教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분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p>	<p>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p> <p>3. <u>직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u></p> <p>4. <u>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치료불능질병·부상·질병·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u></p> <p>제60조의3 (명예퇴직) ①<u>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 정년전</u>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u>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p> <p>제3절 징계</p> <p>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u>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p> <p>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때</p>

현행법률	순화안
<p>2. 職務上の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p> <p>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p> <p>②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으로 한다.</p> <p>③停職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の 2를 減한다.</p> <p>④減俸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の 1을 減한다.</p> <p>⑤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p> <p>第62條 (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 私立學校의 敎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그 任免權者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教育公務員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教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 이상 9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 委員은  당해</p>	<p>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p> <p>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p> <p>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u>질책</u>으로 한다.</p> <p>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p> <p>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u>이하</u>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견책은 <u>앞의 잘못</u>을 훈계하고 <u>뉘우치게</u> 한다.</p> <p>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및 <u>해당</u>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교육공무원법』제50조에 <u>따라서</u>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u>다섯</u>√<u>명</u> 이상 <u>아홉</u>√<u>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p>

현행법률	순화안
<p>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敎員懲戒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審議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63條 (除斥事由) 敎員懲戒委員會委員은 <u>그 자신에 관한</u> 懲戒事件을 審理하거나 被懲戒者와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關여하지 못한다.</p> <p>第64條 (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는 그 소속敎員중에 第61條第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 <u>者가 있을 때에는</u>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敎員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p> <p>第64條의2 (懲戒議決要求事由의 통지) 懲戒議決要求權者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議決을 要求할 때에는 懲戒議決要求와 동시에 懲戒對象者에게 懲戒事由를 기재한 說明書를 <u>송부하여야</u> 한다.</p> <p>第65條 (眞相調査 및 의견의 開陳)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p>	<p>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p> <p>③∨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u>본인의</u>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p> <p>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u>사람이 있으면</u>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이유의 알림)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u>징계이유를 적은</u> 설명서를 보낸다.</p> <p>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p>

현행법률	순화안
<p>理解에 있어서 眞相을 調査하여야 하며, 懲戒議決을 행하기 전에 本人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書面으로 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敎員懲戒委員會는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關係人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第66條 (懲戒議決) ① 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한 결과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主文과 理由를 記錄한 懲戒議決書를 作成하고 이를 任命權者에게 通告하여야 한다.</p> <p>② 任命權者가 第1項의 通告를 받은 때에는 그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그 議決內容에 따라 懲戒處分을 <u>하여야 한다.</u> 이 경우에 있어서 任命權者는 懲戒處分의 事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당해 敎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의 懲戒議決은 在籍委員 3分の 2 이상의 출석과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u>행하여야 한다.</u></p> <p>第66條의2 (懲戒事由의 時效) 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리에서 眞相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 敎員징계위원회는 <u>필요하면</u>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66조 (징계의결) ① √ 敎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 임명권자가 제1항의 <u>알림을 받으면</u> 그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u>하여야 하며,</u>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이유가 적힌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행한다.</u></p> <p>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지나면 행사하지 못한다.</p>



현행법률	순화안
<p>②懲戒委員會의 구성·懲戒議決 기타 節次上的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에 의한 敎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 미만인 경우에는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 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敎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敎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인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52조부터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p>
<p>第5章 補則</p>	<p>제5장 보칙</p>
<p>第70條 (보고·調査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敎育의 實施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제70조 (보고·조사∨등) 관할관청은 사립학교 敎育을 조사하거나, 통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그 밖의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敎育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第70條의2 (事務機構 및 職員) ①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는 그의 事務와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p>	<p>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p>

현행법률	순화안
<p>필요한 事務機構를 두되, 그 設置·運營과 事務職員의 定員·任免·報酬·服務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學校法人 또는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p> <p>②各級學校의 소속事務職員은 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p> <p>第71條 (權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教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은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 경영자는 정관, 개인인 사립학교 ∨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 각급학교의 소속 ∨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 경영자가 임면한다.</p> <p>제7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도 ∨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